

현안분석 2006-

법령용어 □

비송사건 관련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 병 일

현안분석 2006-

법령용어 □

비송사건 관련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Die Problematik auf die Terminologien sowie Satze in der
freiwilligen Gerichtbarkeit und deren Verbesserungsmaßregel

연구자 : 장 병 일 (부연구위원)
Jang, Byeong-II

2006. 10. 31.

국문 요약

비송사건은 정규재판관할의 하나이며, 심판과 기타 사법사항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송사건은 일반적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다른 쪽에 서 있는 개념이다.

비송사건에는 보통 법인, 신탁, 재판상의 대위, 보존·공탁·보관과 감정, 부부재산약정등과 관련이 있는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으로서 회사와 경매, 사채(社債), 회사의 청산(清算), 상업등기(商業登記) 등에 관한 사건 등을 나열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가사비송사건 관련법을 주 대상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소송사건은 실질적으로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만, 이에 대하여 비송사건은 실질적으로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다. 소송사건은 권리의 침해에 대한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지만, 비송사건은 반드시 그러한 사항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신, 소송 외적인 내용에 대한 절차를 정한다는 점에서 일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송사건관련 법령은 일반인의 생활관계와 밀접하게 존재하고,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의 재량행위의 불투명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비송사건을 규율하는 개개의 법률에 있어서 그 용어와 문장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한다면, 비법률가인 일반인이 관련 법규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권리보호와 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키워드 : 「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일반론, 가사비송사건, 비상사건과 소송사건의 관계, 법령용어순화, 법령문장순화

Zusammenfassung

Freiwilliges Gerichtbarkeit ist ein Teil der ordentlichen Gerichtbarkeit. Sie steht im Gegensatz zur streitigen Gerichtbarkeit. Sie ist ein staatlich geregeltes Verfahren für bestimmte (meist privatrechtliche) Angelegenheiten, das teils von Amts wegen, teils auf Antrag eingeleitet wird.

Zur Freiwilliges Gerichtbarkeit gehören die Tätigkeit der Gerichte, ; z.B. als eine bürgerliche Sache der Vereine, des Treuhandes, gerichtlicher Surrogationen, der Einigungen der Eheverträge ; und als eine handlungsrechtliche Sache der Gesellschafte, der Versteigerungen, der Aktionen, des Ausgleich im Insolvenzverfahren, des Handelsregisters.

Das Gegenteil meiner Forschung ist insbesondere die freiwilligen Gerichtbarkeit über die Familiensache.

Die streitigen Gerichtbarkeit ist in der Regel eine Jurisdiktion, demgegenüber ist die freiwilliges Gerichtbarkeit ein Verwaltungsakt. Daher bestimmt die freiwillige Gerichtbarkeit ein Prozess der außer streitigen Gerichtbarkeiten. In dieser Sinne beeinflusst die Gesetzen über die freiwillige Gerichtbarkeiten die Rechte und Pflicht der Bürger. Noch zu klar erzählende Gesetzinhalte sind darin. Der Inhalt der koreanischen Gesetz über die freiwillige Gerichtbarkeiten beinhaltet noch schwierigen Wörter und Sätze. Infolgedessen könnte die Rechte der Bürger beeinträchtigt werden. In diesen Gründen bemühe ich mich durch diese Abhandlung um die noch einfache gesetzlichen Wörter und Sätze in der legelen Vorschriften zu schreiben.

※ **Stichwörter** : Das Gesetz über die freiwillige Gerichtsbarkeit, Die
Allgemeinheit der freiwillige Gerichtsbarkeit, Die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als Familiensachen,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ständigen Gerichtsbarkeit
und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die Veredelung der
Terminologien in der Vorschriften.

목 차

국문요약	3
Zusammenfassung	5
I. 서 론	9
1. 연구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3. 용어 순화의 경과와 동향	12
II. 비송사건 일반론	15
1. 비송사건의 개념	15
2. 소송사건과의 구별	17
(1) 학설의 입장	17
(2) 학설의 평가	18
3. 비송절차의 특징	19
(1) 비공개의 원칙	19
(2) 기속력제한	19
(3) 직권주의 (처분권주의의 배제)	20
(4) 직권탐지주의 (변론주의의 배제)	20
III. 가사비송사건	23
1. 가사비송개관	23
2. 가사비송사건의 종류	24
(1) 『가사소송법』 제2조의 “라”류 사건	24

(2) 『가사소송법』 제2조의 “마”류 사건	26
3. 가사비송사건의 기본원칙	27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29
1. 누구를 위한 순화인가?	29
2. 가사비송사건관련 법령용어 순화의 기준	30
3. 법률용어의 순화	32
(1) 한자어 분류시의 주의 사항	32
(2) 『비송사건절차법』상의 한자어 순화안	33
(3) 일본어식 용어의 순화	51
4.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53
(1) 비문법적 문장	53
(2) 복문의 단문화	60
(3) 문장과 표현 면	62
5. 기 타	70
(1) 표제어의 법적 구속력	70
(2) 폐지되어야 할 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63조)	71
(3) 법령이름 띄어쓰기	72
V. 결 론	79
《 부 록 》	
『비송사건절차법』 및 가사비송사건 관련조문의 순화대비표	83
참 고 문 헌	143

I. 서론

1. 연구목적

비송사건은 정규재판관할의 하나이며, 법원의 결정과 기타 사법사항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송사건은 일반적인 소송 사건을 중심으로 볼 때, 관념적으로 다른 쪽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그것들은 국가가 규정한 절차들을 어떤 특정 (사법상의) 사건들을 위하여 일부는 직권에 의해서, 또는 부분적으로는 신청에 의하여 개시하게 된다. 그 기초가 되는 법률은 『비송사건절차법』(2005.3.31 일 부개정, 법률 7428호)이다.

비송사건에는 보통 법인설립절차, 신탁절차, 재판상의 대위, 보존·공탁·보관과 감정, 부부재산약정, 후견인선정, 재산관리인선정 등과 관련이 있는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으로서 회사와 경매, 사채(社債)발행절차, 회사의 청산(清算)절차, 상업등기(商業登記) 등에 관한 사건 등을 나열할 수 있다.

보통 소송사건은 실질적으로 사법작용(司法作用)이라고 보는 반면에, 비송사건은 실질적으로 행정작용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소송사건은 권리의 침해에 대한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지만, 비송사건은 반드시 그러한 사항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 소송 외적인 내용에 대한 절차를 정한다는 점에서 소송사건 못지 않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송사건관련 법령은 일반인의 생활관계와 밀접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절차 관련법령의 각 조문에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존재한다. 비송사건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러한 비송사건절차 관련법규들을 근거로 그들의 행정행위를 통하여 알게 모르게 일반인의 권리를 침해, 제한할 수 있는 여

1. 서론

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일반인들의 법령용어에 대한 이해가능성의 어려움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인의 법률접근성, 법령용어 및 문장에 대한 이해의 곤란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근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제거에 법령용어 및 문장 순화의 목적이 있다. 즉, 비법률가인 일반인들로 하여금 순화를 통한 관련 법규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권리보호와 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비송사건은 크게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한다. 이 중에 민사비송절차는 법인, 신탁, 재판상의 대위, 보존·공탁·보관과 감정, 부부재산약정, 후견인선정, 재산관리인 선정 등과 같은 사건들이고, 이 범위에 속하는 모두를 나열하여 고찰한다는 것은 지면의 한계와 그 연관성에서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그 범위를 가사비송사건 관련 법령용어와 문장을 주된 연구 범위로 한정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민사적 권리실현을 위한 법원(法院)은 민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일반 민사법원(民事法院)과 가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家庭法院)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정법원에 의한 가사소송절차는 가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인데,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분쟁의 획일적 처리, 진실발견 등을 위해 민사소송절차와는 다른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가사사건에는 크게 가사재판사건과 가사조정사건이 있다. 여기서 가사재판사건을 다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그 관할에 따른 라류, 마류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사건들이 가사비송사건들이다. 이러한 비송사건을 다루는 절차가

가사비송사건절차인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가사비송절차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령은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법」 시행규칙인데, 「가사소송법」 제34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중 제15조¹⁾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보충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에서는 다시 「민사소송법」 중 기일·기간·소명방법·인증·감정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사소송법」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고, 다시 「비송사건절차법」은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비송사건도 소송사건과 함께 사권(私權)실현을 위한 법원의 관할에 있어서 겉과 속의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범위와 관련해서는 먼저 「가사소송법」 제3편의 가사비송사건에서 나타나는 법조문의 문장과 용어의 순화를 논의하려면 먼저 비송사건에 관한 기본절차를 먼저 고찰해야 하며, 이러한 비송사건도 「비송사건절차법」을 통하여 「민사소송법」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민사소송법」의 2002년 개정 당시의 선례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방법과 순화의 기본방향은 민사소송상의 순화 작업²⁾을 기준으로 하여, 「비송사건절차법」 규정과 「가사소송법」 및 규칙에서 나타나는 비송사건 관련 조문에서 나타나는 전근대적이고 이해가 어려운 법령용어와 문장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순화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본다면 매번 제기되는 문제로서, 일본용어의 답습과 한자식 표현이다. 이는 우리의 역사적 상황에서

-
- 1) 「비송사건절차법」 제15 조(검사의 의견진술·참여);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박갑수, 『개정 「민사소송법」의 순화와 향후과제』, -법령용어정비사업 2003년 제1차 전문가회의-, 2003.4.30. 14쪽 참조.

1. 서론

비롯되는 문제이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 인식의 단계를 넘어서 과감한 청산과 정비의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기인 것이다. 이에 따라서 비송사건 관련법령, 특히 가사비송사건과 관련한 법률조문에서 나타나는 법령용어와 문장 순화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법령에서 나타나는 법문의 권위성을 극복하고, 또 이해의 어려움에서 연유하는 법원의 불투명한 행정적 재량행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부록에서는 기존 법조문과 이에 대한 순화안을 작성하여 대조표를 만들어서 일반인이 법률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편한 용어사용례를 보이려고 하였다. 대조표상에 띄어쓰기의 오류는 본문에서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고 (√)표시만을 해 두었으며, 본문 내의 예시되는 내용은 해당 순화문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다. 따라서 다른 순화내용은 부록내의 순화안에 모든 변화사항을 표시하였다.

3. 용어 순화의 경과와 동향

법제처 차원에서는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9월부터 구법령 정리사업에 착수한 이래 일본식 용어, 한자식 표현, 지나치게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게 풀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법령용어정비작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었다. 지난 2003년 8월에 『법률한글화 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지만, 이 특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고, 지난 2004년 12월 29에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으나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2005년 6월 28일에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에 관한 인터넷설문조사³⁾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의견이

3) 당시 방식은 두 가지, 즉, 일괄입법과 개별입법방식이 있었는데, 개별입법은 2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일괄입법방식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대다수였다.⁴⁾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법제처 내부예규에 의하여 그 특별조치법안 내용들이 실행되고 있다.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은 “한자로 된 법률을 모두 한글로 바꾸되,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 올바른 뜻이 전달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혼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05년 1월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방안이 이루어졌다.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필요성 내지는 유용성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진 법령제명의 띄어쓰기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법제처는 2004년 4월부터 50여 곳에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였는데, 그 결과 찬성은 42곳 중 19곳(45%), 반대는 14곳(33%), 무의견 9곳(21%)으로 나타났다.⁵⁾ 결과적으로 법제처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기본방향으로 어문규범에 맞게 법령제명을 띄어 쓰되,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법령자료 시스템의 개편비용, 법령집 출판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일괄적인 법령의 제명개편은 불가능하고, 그 대신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제·개정되는 법령에서부터 띄어쓰기로 차츰 바뀌어나간다는 계획으로 제명띄어쓰기를 추진하여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⁶⁾

정부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측은 각종 규제관련 법조문들이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되어 이해하기 어렵고 어법에도 어긋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규제심사단계에서부터 법령을 올바르게 정비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면, 이에 따른 해당부처 차원에서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

4) 법제처 정책고객서비스 제2005-11호(2005년 6월28일)에 의한 법제처 설문조사; 장병일, 부동산등기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5.8, 한국법제연구원, 13쪽 참조.

5) 홍승진, 법령제명 띄어쓰기 추진경과, 월간법제 2005년 1월호, 제3쪽의 표 참조.

6)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5. 기타 (1)법령띄어쓰기 참조.

1. 서론

었다. 이에 부응하여 법령용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순화작업이 이뤄지게 하고 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에 대한 업무절차⁷⁾와 업무처리⁸⁾에 대한 예시를 각 부처에 보급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법령용어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법령용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작업은 주로 국어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⁹⁾, 이러한 검토의 기준 또한 본 연구의 한 기준이 되었다.

7) ①법령안 규제심사의뢰(해당부처→규제개혁위원회), ②심사 담당자 판단, 의뢰(규제개혁위원회 담당자→국어전문가(1일 이내)), ③국어적합성 검토(국어전문가(최장14일 이내)), ④법령검토안 회신(국어전문가→담당자) ⑤검토의견내용 통보(담당자→해당부처(0.5일)) : 수용여부는 부처의 자율.

8) ①해당부처에서는 법안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이 매뉴얼을 참고해야 하여 좋은 법령문장의 요건, 검토주안점, 사례 등을 비교·분석해야 한다. ②규제개혁위원회 업무 담당자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국어전문가에게 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③규제개혁위원회 운영담당자는 우수검토사례를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전파해야 한다.

9)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2004년 4월 11일에 문화관광부에 국어전문가 추천을 의뢰함. 이어 2004년 4월 12일에 바로 문화관광부에 의하여 국립국어원 소속 국어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2005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제정과 개정된 법령 20건을 검토, 규제심사 담당자에게 수시보고의 형태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II. 비송사건 일반론

1. 비송사건의 개념

비송사건은 일반적으로 私權關係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사회경제문화의 발전에 따라 모든 비송사건을 실정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소송사건은 ‘법원이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존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사건’이고,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어떤 권리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법원이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사건’이라는 견해¹⁰⁾도 있다. 위에서 말한 사권관계(私權關係)의 형성·변경·소멸은 다름 아닌 어떠한 권리·의무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사권관계에서 말하는 사권(私權)은 소유권, 제한물권, 채권은 물론이고, 대리권이나 그러한 권리의 주체인 인격도 포함된다.

현행 우리나라 비송사건 절차법의 총칙편(제1편)에서는 비송사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민사비송사건(제2편), 상사비송사건(제3편)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 그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거의 모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독일의 비송사건법률을 비교법적으로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소송사건(Gerichtbarkeit)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5가지로 분류된다. 정규 소송사건¹¹⁾과 함께 행정사건, 재정사건, 노동사건, 그리고 사회사건이 있다(비교, 독일기본법 제95조 제1항; vgl. Art.95

10) 법원실무제요(소년·비송), 법원행정처, 2000

11) 그 재판관할이 지방법원, 주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II. 비송사건 일반론

Abs.1 GG). 독일에 있어서 비송사건은 정규재판관할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일반 소송사건의 바깥쪽에 서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것들은 어떤 특정 사법(司法)상의 사건들을 위하여 국가가 규정한 절차들을 일부는 직권에 의해서, 또는 부분적으로는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여기에는 비송사건에 속하는 결정(예를 들면, 상속증명서 발급신청에 관한 상속법원(Nachlaßgericht)의 결정)과 기타 사법(司法)사항들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기초가 되는 법률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FGG)이다. 독일에서도 한국의 경우와 같이 직권탐지주의(Untersuchungsgrundsatz)가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비송사건에서는 광범위한 직권수행이 지배적이며,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정(Beschluß) 또는 처분(Verfügung)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당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있을 뿐이다. 심리(Verhandlung)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구술심리는 통상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지만, 부분적으로(예컨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및 영구거주권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44 I WoEigG¹²⁾) 실시된다. 제1심에서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예비결정 Vorbescheid) 간이 또는 즉시항고가 이루어진다(§§19, 22 FGG). 이에 대해서는 주(州)법원이 결정한다. 항고결정(1심비용만이 아닌)에 대해서는 법률항고(Rechtsbeschwerde)로서 기타 항고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독일의 후견법원(Vormundschaftsgericht)관할 사건, 상속법원(Nachlaßgericht)사건, 구(區)법원의 등록등기사무에 관한 사건들(Registergericht), 등기소(Grundbuchamt), 공증, 집합건물소유권(Wohnungseigentum)과 농업사건(Landwirtschaftsachen), 구류(Freiheitsentziehung)와 청산(Wiedergutmachung; Rückerstattungsverfahren) 등이 비송사건(Freiwilligergerichtsbarkeit)에 속한다. 특별한 것으로는 가사사건(가정법원)로 간주되는 그리고

12) Wohnungseigentumsgesetz in der Bundesgesetzblatt Teil III(BGBI.I S.718)

특히 이혼과 관련한 이혼부속사건이 이 사건영역으로 간주된다.¹³⁾ 이로써 우리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소송사건과의 구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제소한 경우, 예를 들면 통상 가처분신청사건으로 접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 그 사건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관할위반의 문제가 아니고, 소송의 적법요건 또는 비송사건절차의 개시요건 문제이므로 절차를 잘못 택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적합한 소(訴) 또는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상 절차를 잘못 선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사건을 취하하고 비송사건으로 다시 접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구분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1) 학설의 입장

이에 대해서는 목적설, 대상설, 수단설, 형식설(실정법설) 등의 다양한 견해가 있다.

① 목적설의 입장은, 비송사건은 사법질서의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소송사건은 사법질서의 유지와 확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거나, 비송사건은 경찰적·예방적 목적을 가지고, 소송사건은 회복의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② 대상설의 입장은, 비송은 다툼 없는 권리의 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소송은 다툼 있는 권리의 확정과 실현을 그 대상으로 한다. 또는 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주장에 대하여 결정을

13) Wolfgang Brehm, Freiwillige Gerichtbarkeit, 2.Auf. 1993, S.38.

II. 비송사건 일반론

하는 것이고, 비송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형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사법상의 형성권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기관이 스스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한다.

③ 수단설의 입장은, 민사소송의 수단은 일정한 청구권과 그 집행가능성을 기관력으로 확정하는 것이고, 비송사건에서는 확정이나 집행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소송의 핵심인 법률상 분쟁은 실체상의 법률상태의 존재나 부존재에 관한 1회의 확정력 있는 판결을 중심으로 함에 비하여, 비송에서는 ‘사람이 사법이라는 법 영역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까닭에 비송은 사법에 맡겨진 행정이라고 한다.

④ 형식설(실정법설)의 입장은, 입법자가 어떤 종류의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지정하고 어떤 관청이 이를 어떤 절차에 따라 취급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정한 것만이 비송사건이다. 또 비송사건은 사법상의 사건으로서 그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건이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사건으로 취급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한다.

(2) 학설의 평가

실무에서는 형식설(실정법설)에 따라 당해 법령에 『비송사건절차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송사건으로 취급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으로 취급한다고 한다.¹⁴⁾ 그러나 위와 같은 학설의 대립은 거의 의의가 없는 이유가 『비송사건절차법』에는 비송사건이 거의 망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실정법을 떠나서는 그 본질을 언급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¹⁵⁾ 또한 비송사건절차에서 행해지는 법원의 행위가 행정행위인 경우, 그것이 재량행위라 보더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는 불가

14) 재판실무편람(V), 2004, 3, 법원행정처, 1쪽.

15) 개정증보 법원실무제요 가사소송 7쪽 참조.

능하므로, 실무에서 인정되는 형식설이 옳다고 볼 수 있다.

3. 비송절차의 특징

소송사건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소송 이외에 비송이라는 특별한 절차가 만들어진 이유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적절히 해결할 수 없는 민사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온다.

(1) 비공개의 원칙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이나 판결과 달리, 비송사건의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당한 경우에는 비송사건 결정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비송사건절차법』(이하 비송) 제13조). 따라서 비송사건의 심문은 공개된 법정에서 다른 사건과 함께 행할 수 없으며, 보통 심문실이나 조정실에서 진행하게 된다. 법정에서 심리되는 민사본안사건의 변론이나 신청사건의 변론 또는 심문과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문을 공개로 진행한 경우에는 항고이유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기속력제한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도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비송 제19조 제1항). 그러나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고(동조 제2항),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동조 제3항).

(3) 직권주의 (처분권주의의 배제)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처분권주의 또는 당사자 처분권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근대의 자유주의·개인주의 이념에 따라 사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자치적 해결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 자치(私的自治) 원칙의 소송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제203조에서 이 처분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자료의 수집에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변론주의 및 소송절차의 적정한 진행과 정지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진행주의를 포함하지 않는 협의의 처분권주의를 의미한다.¹⁶⁾ 구별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비송절차에 있어서는 이러한 직권주의가 지배한다. 우선 절차개시 면에서 법원이 공익적 측면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고, 절차종료 면에서도 직권으로 개시된 사건은 당사자의 취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재판의 내용이 반드시 신청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며, 원칙적으로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직권탐지주의 (변론주의의 배제)

민사소송상 법원이 사실인정을 하려면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에게 사실의 유무를 다툴 기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사실인정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변론주의라는 원칙이다. 즉, 변론주의란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원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고, 사실을 확정하려면 이에 따른 자료의 제출·사실상의 주장·증거신청·이 필요한

16) 김상수, 『민사소송법』개론, 2002, 법우사, 170쪽.

데, 이것을 당사자의 권능 및 책임으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변론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이루는 것은, ①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고, ②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의 자백은 법원을 구속하며, ③증거조사는 반드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3가지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비송절차인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고(비송 제11조), 의제자백(擬制自白)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이를 빌려줘야 한다(비송 제30조). 그러나 실제로는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다.

Ⅲ. 가사비송사건

1. 가사비송개관

가사소송절차란 가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분쟁의 획일적 처리, 진실 발견 등을 위해, 민사소송절차와는 다른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가사사건에는 크게 가사재판사건과 가사조정사건이 있다. 여기의 가사재판사건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2조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따른 라류, 마류 사건이 직접적으로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것이다.

가사비송사건은 글자 그대로 분쟁사건이 아닌 사건으로서 신분관계에 관한 것이고, 일신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가사비송절차는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이다. 「비송사건절차법」이나 「가사소송법」(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은,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는 목적에서, 그 절차의 특징이 앞서 본 소송절차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① 반드시 대립하는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분쟁이 쟁송성을 띄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② 법원이 요건사실존부의 확정을 할 필요 없이 권리의무의 재량적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

③ 직권탐지주의·비공개주의 등의 절차원칙과 임의적 신청사건, 심문절차, 자유증명 등의 절차의 방식을 따르는 점,

④ 사정변경에 의한 최소나 변경이 가능한 결정이라는 재판이 요구되는 점,

Ⅲ. 가사비송사건

⑤ 항고와 재항고라는 상소를 취하고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그 기본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령으로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이 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34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중 제15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의 보충적 적용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에 의한 「민사소송법」 준용의 규정에 의해 가사소송절차에 준용 또는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등과 같은 일반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2. 가사비송사건의 종류

(1) 「가사소송법」 제2조의 “라”류 사건

1) 의 의

가사비송 사건을 규율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 나호의 “라”류 사건은 가사비송사건 중 상대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절차에서 가정법원이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을 하는 사건으로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2) 종 류

- 1)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민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2)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3) 성과 본의 창설허가(「민법」 제781조 제4항)
- 4) 자(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민법」 제781조 제5항)
- 5) 자(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민법」 제781조 제6항)
- 6)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

- 7)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민법』 제829조 제2항 단서)
- 8)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민법』 제869조 단서)
- 9)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과양동의에 대한 허가(『민법』 제871조 제900조)
- 10)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민법』 제872조)
- 11)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과양협의를 대한 허가(『민법』 제899조 제2항)
- 12) 친권행사방법의 결정(『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
- 13) 감화(感化)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민법』 제915조, 제945조)
- 14) 재산관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민법』 제918조)
- 15) 특별대리인의 선임(『민법』 제847조 제2항, 제921조)
- 16)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 17)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민법』 제936조)
- 18)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민법』 제939조)
- 19)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민법』 제941조 제1항 단서)
- 20)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민법』 제954조)
- 21) 금치산자 감독 등에 대한 허가(『민법』 제947조 제2항)
- 22)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민법』 제955조)
- 23) 후견종료시 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 24) 친족회원의 선임, 보충, 개임 또는 해임(『민법』 제963조 제1항 본문, 제965조 제2항, 제971조)
- 25) 친족회 소집(『민법』 제966조)
- 26)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민법』 제966조)
- 27)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민법』 제969조)

Ⅲ. 가사비송사건

- 28)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민법』 제970조)
- 29)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민법』 제1019조)
- 30) 상속재산보전을 위한 처분(『민법』 제1023조)
- 31)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의 그 취소신고의 수리(『민법』 제1024조 제2항, 제1030조, 제1041조)
- 32) 감정인의 선임(『민법』 제1035조)
- 33)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민법』 제1040조)
- 34) 상속재산의 분리(『민법』 제1045조)
- 35) 상속재산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민법』 제1047조)
- 36)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민법』 제1053조)
- 37) 상속인 수색의 공고(『민법』 제1057조)
- 38)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민법』 제1057조의2)
- 39) 유언의 검인(檢認)(『민법』 제1070조 제2항)
- 40)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
- 41) 유언증서의 개봉(『민법』 제1092조)
- 42)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민법』 제1096조)
- 43)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취한 통지의 수리(『민법』 제1097조)
- 44)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민법』 제1104조)
- 45)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민법』 제1105조)
- 46) 유언집행자의 해임(『민법』 제1106조)
- 47)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민법』 제1111조).

(2) 『가사소송법』 제2조의 “마”류 사건

1) 의 의

재산분할(마류 제4호),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심판(마류 제3호, 제5호)와 같이 협의가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

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그 대상으로 된다.

2) 종류

- 1)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민법』 제826조, 제833조).
- 2)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민법』 제826조 제3항)
- 3)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민법』 837조, 제837조의2)
- 4)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5)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6항)
- 6)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신고 및 실권회복의 신고(『민법』 제924조부터 제926조까지)
- 7)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민법』 제972조)
- 8) 부양에 관한 처분(『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
- 9) 기여분의 결정(『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 10)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민법』 제1013조 제2항)

3. 가사비송사건의 기본원칙

가사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비공개주의, 본인출석주의, 직권탐지주의를 심리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비송사건은 변론을 요하지 않는다. 라류 사건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가사소송법』 제45조) 이에 비하여 마류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한 다음 심판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

이들 가사비송사건의 심문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나, 가정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다(『비송

Ⅲ. 가사비송사건

사건절차법』 제13조).¹⁷⁾ 방청허가는 법원의 비공개결정에 준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법정에서 고지하고 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원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3조).

17) 다만, 마류 사건의 심문은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실무제요 가사(개정증보판), 법원행정처 (1994), 200쪽.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1. 누구를 위한 순화인가?

법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에는 도덕규범과 종교규범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법규범은 이러한 규범의 일부분이지만, 어떠한 일방적인 종교규범과는 구분되는 일반인들이 지켜야 하는 약속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이 지켜야 하는 약속들을 모두 문헌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률용어가 어렵고, 함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법해석의 경우에 문언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가 기준으로 된다. 이것은 법수범자의 관점에서 도출되는 것이며,¹⁸⁾ 여기서 법수범자를 일반인으로서 “법문외한”이란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수범자들을 위하여 입법자가 그들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용어와 그 문장의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 까닭에 법수범자들은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법령용어 및 법조문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법령용어 순화의 필요성이 등장하며, 입법자가 그들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는 경우가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법령용어의 순화라는 것은 단순히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준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자어, 일본식언어 등을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과 함께 권위적인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잘못된 어문법의 순화 작업을 의미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전문용어로서의 법령용어순화와 법조문에서의 국어문법적인 관점에서 행해지는 구조상의 문제로서의 문장순화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법령용어순화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즉, ①한자어의 단순 한글변환에 있어서 문

18)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집 73권, 302쪽 이하 (BVerGE 73, 302f.).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제점, ②한자어의 순화, ③일본식용어의 순화이다. 둘째로는 법조문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한 순화의 기준이다. 이는 주로 국어문법적인 문제점의 지적과 그에 대한 순화안과 관련한 기준이다. 이 부분에서는 법률분야의 전문용어를 벗어난 일반 단어도 그 언급의 필요성이 있다. 문장 전체를 두고 고찰할 때는 주로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루게 되는데, 이는 주로 국어문법적인 기준에 의하여 고찰될 것이다.

2. 가사비송사건관련 법령용어 순화의 기준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사건은 실질적으로 사법작용(司法作用)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민사비송사건은 실질적으로 민사사건에 대한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사비송사건 절차실행 과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미 설명했듯이,¹⁹⁾ 『비송사건절차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과 민사비송에 관한 구분기준에 관해서는 학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소송사건은 권리의 침해에 대한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비해, 비송사건은 반드시 그러한 사항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신, 소송 외적인 내용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의무의 실현에 있어서 비송사건절차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변화에 따라서 『비송사건절차법』도 변화를 해야 하는 당위성 또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의 개정 당시 대법원은 소송제도의 운영경험과 사회문화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소송제도를 위하여 1996년 9월 “민사소송법 재정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02년 7월에 개정민사소송법이 시

19) 앞의 I. 2. 연구범위 및 방법 참조.

행되기에 이르렀다. 개정민사소송법 내용은 물론 우선적으로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법제도상의 개선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개정민사소송법은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에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여, 누구든지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한글순화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우선적인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개정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이념에 따라서 그와 불가분의 작용을 하는 『비송사건절차법』과 『가사소송법』도 『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목표와 이념에 따라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른 비송사건의 내용에 있어서 법령용어의 현대화 또는 순화의 작업은 더욱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02년 개정 당시 민사소송 법률안의 법률용어 순화원칙²⁰⁾으로는,

- ①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용어의 순화
- ② 구시대적 한문 투의 용어의 순화
- ③ 준말이라 할 수 있는 어려운 용어의 순화
- ④ 일상용어지만 좀 더 순화할 수 있는 용어의 순화
- ⑤ 일본식용어, 특히 훈독어의 순화
- ⑥ 권위주의적 용어의 순화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개정 당시 실제 개정 당시 기준이 되었던 『민사소송법』상 법률문장의 순화원칙으로는,

- ① 한문 투의 문어체, 일본어식 표현의 순화
- ② 비문법적 문장의 순화
- ③ 명사구 오남용의 순화
- ④ 길고 복잡한 문장의 순화

20) 박갑수, 『개정 『민사소송법』의 순화와 향후과제』, 법제연구원, 2003년 제1차 전문가 회의, 15쪽 참조; 장병일, 『부동산등기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원, 2005년, 29쪽.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 ⑤ 난해하거나 의미가 모호한 문장의 순화
- ⑥ 의미파악이 곤란한 문장에 대한 생략된 자료의 보충 등이 그 원칙들이다.

이들 원칙들은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비송사건절차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들, 즉 『비송사건절차법』 및 『가사소송법』 내의 가사비송사건절차에서도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송사건절차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율대상이 엄연히 구분된다는 이유로 그 원칙적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가사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분야를 포함하여 절차법 사이의 법률용어통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민사소송법』 개정 당시의 원칙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원칙들을 위에서 언급했던 기준에 따라 단어 사용으로서 나타나는 법률용어와 문장구조면에서의 법률문장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법률용어의 순화

(1) 한자어 분류시의 주의 사항

법령용어 순화의 경우에 모든 한자를 한글 또는 순수 우리말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순화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한자어는 다음의 세 가지, 즉

- ① 『비송사건절차법』과 『가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서 개념 및 요건 등이 규정된 법률용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
- ② 『비송사건절차법』과 『가사소송법』에서 개념 및 요건 등이 규정되거나 이 법률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
- ③ 법률용어가 아닌 한자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비송사건절차법」과 「가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서 개념 및 요건 등이 규정된 법률용어 또는 일반적 법률용어로서 사용되는 한자어는

- (i) 다른 법령상의 한자어와 「비송사건절차법」과 「가사소송법」에서의 순화된 용어가 혼용됨으로써 오히려 개념정의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 (ii)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기존 법조인들의 거부감 발생의 가능성,
- (iii) 법률문헌의 광범위한 개정작업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의 과다 발생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중의 어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차후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함께 연구하면서 순화해 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점 범위 내에서는 순화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 「비송사건절차법」상의 한자어 순화안

(가) 한글과 한자(漢字)의 동시표기

2004년 12월 29에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구체화되지 못하였고, 2005년 6월 28일에는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에 관한 인터넷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의견이 대다수였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한자로 된 법률을 모두 한글로 바꾸되,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 올바른 뜻이 전달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혼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법제처 내부예규에 의하여 그 특별조치법안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법률안에 따른 「비송사건절차법」, 「가사소송법」 및 규칙에서의 비송사건관련 조문 중에 단순한글로 변환된 단어 중에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 즉, 한글로 표기된 단어가 다른 의미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자로 그 의미를 밝히지 않은 단어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혼동의 우려가 있는 법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를용어들을 뽑아서 설명하였다.

① 검사→검사(檢事)/검사인→검사인(檢査人)

『비송사건절차법』 제95조와 제116조의 ‘검사’와 제73조의 ‘검사인’이라는 용어도 여기에 해당한다. 제95조의 ‘검사(檢事)’를 한글로만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제73조 이하의 ‘검사인(檢査人)’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검사(檢事)라고 한자와 함께 표기를 해야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123조/제24조/제52조/제58조 표제/제73조 제1항/제74조/제80조/제81조 표제/제90조 제2항/제91조/제248조 제2항과 제3항/제249조 제1항/제250조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재산상태 보고등)
 ①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 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순화안>

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재산상태 보고등)
 ①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 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검사(檢事)**는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22조 (검사인)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순화안>

제122조 (검사인(檢査人))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상호신용금고업이나 상호신용금고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채→사채(社債)

『비송사건절차법』 제2장의 표제에서 ‘사채에 관한 사건’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사채(私債)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으로서 회사의 채무를 의미하므로 ‘사채(社債)’로 한자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109조에서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라는 규정과 제110조의 표제 그리고 제111조의 “...사채권자(社債權者)...”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사채(社債)’처럼 한자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 『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 (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순화안>

제109조 (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社債)**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11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① 「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순화안>

제111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① 「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해명**하여 **사채권자(社債權者)**집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자→자(子)

혼동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 ‘~나자(者)’이다.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많이 순화된 사항이다. 그 예로서는 ‘~나자’ 표현들이 ‘~한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사람’으로 바뀌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에서 “...해당하는 자...”, “...상실된 자...” 그리고 “...받은 자...” 등의 표현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4조 제3호의 ‘공동의 자’를 한자 없이 한글로 표현할 때,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ㄴ 자(者)’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 ‘자녀’를 의미하는 ‘자(子)’는 한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고, 동시에 ‘~ㄴ 자’의 표현은 ‘~하는 사람’이라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순화시킨다면 두 한글에 대한 의미가 앞으로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가사소송규칙』 제99(당사자)조 및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가사소송법』 중 가사비송사건**

제44조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1. 금치산·한정치산에 관한 사건, 실종에 관한 사건,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재산소제지의 가정법원
3. 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정법원
4.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 또는 양자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부부간의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을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사건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

<순화안>

제44조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1. 금치산·한정치산에 관한 사건, 실종에 관한 사건,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재산소제지의 가정법원
3. 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정법원
4.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 또는 양자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부부간의 **공동의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

정사건을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사건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

(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① 직근(直近)→바로 위의

『비송사건절차법』 제4조 제2항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자어를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한글로 변환시켰을 경우에는 그 이해의 정도가 더욱 어려운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조문의 의미는 단독일 경우 합의부에서, 합의부에서는 합의부원 구성이 안 될 때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자어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순화하는 방안이 더 좋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 4 조 (관할법원의 지정) ①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순화안>

제 4 조 (관할법원의 지정) ①생략

②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체당(替當)→빌려 줌.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에서는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체당’이란 단어에 대한 국어사전상의 의미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는 첫째, 남이 할 일을 대신하여 담당함, 둘째의 의미는 나중에 상환 받기로 하고 금전이나 재물을 대신 지급하는 일이라고 한다. 의미상 둘째의 의미가 이 조문에 해당한다. 간단하게 ‘빌려주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용어의 뜻을 쉽게 나타내면 빌려주는 것이므로, 순화안으로서 ‘빌려줌’ 또는 일반적인 한자어인 “대여(貸與)”라는 용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화의 특성에 맞추어 ‘빌려줌’으로 바꿀 수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부담)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채당**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빌려줌)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빌려줘야** 한다.

③ 무진업(無盡業) → 상호신용금고업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와 제119조에서는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무진업이란 것은 지난 과거 한국·일본에서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조직된 서민금융업. 무진(無盡)이란 일정한 계좌수(計座數)와 급부금액(給付金額)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시키고 1계좌마다 추첨·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의하여 금액 납입자에게 일정금액을 급부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계(契)와 비슷한 형태이다. 무진을 영업으로 하며 회사형태를 취한 것이 무진회사이며, 무진업법(無盡業法)은 1915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포되었다. 한국에서 무진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22년 4월 <조선무진업령(朝鮮無盡業令)>이 공포된 때부터이다. 무진은 ①용자시기가 추첨·입찰 등 우발적 요인(偶發的要因)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하기

가 곤란하며, ②일정한 계좌수로 모임, 즉 조(組)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조직상의 불편이 있고, ③소자본에 의한 상호금융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대부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④예금과 대출이라는 상반된 계약이 동일계약상에 성립되어 있어 금리계산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의 결함이 있다. 그러나 ①소액의 불입제도이므로 가입이 쉽고 가입 후에는 확정된 용자를 받을 수 있고, ②장기간의 분할상환식금융이므로 서민과 중소기업자에게 적합한 금융방식이며, ③소비대차계약(消費貸借契約)이 아니므로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에 의한 이율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서민금융의 주요담당자 역할을 해 왔다. 무진회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무진(韓國無盡)·중앙무진(中央無盡)·대구무진(大邱無盡)·한국신흥무진(韓國新興無盡)·고려무진(高麗無盡) 등 5개의 무진회사가 있었으나 무진이 갖는 한계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무진업의 여러 가지 결함을 지양하고, 신용력과 담보능력이 미약한 서민을 위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고조되어 1961년 12월 7일 국민은행법(國民銀行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무진회사 중 일부를 흡수병합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국민은행이 설립되었다. 그 후 사설(私設) 무진회사들이 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시중은행의 채권누증(債權累增), 자금고갈 등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1971년 8월 상호신용금고법(相互信用金庫法)이 제정되면서 상호신용금고에서 합법적으로 무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²¹⁾

이에 따라 무진업(無盡業)이란 것은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로서 ‘상호신용금고업’이라고 순화하면 현대화와 더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순화된다고 본다(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제122조).

21) <http://kr.dic.yahoo.com/search/enc> : Yahoo Korea 통합사전 내 백과사전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관할법원)

① 생략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에 대한 감독도 또한 같다.

<순화안>

제117조 (관할법원)

① 생략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업 또는 상호신용금고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에 대한 감독도 또한 같다.

(다) 한자를 이용하여 표현된 용어

① 수개(數個) → 여러 개

『비송사건절차법』 제3조와 제4조 제1항에서 나타나는 “수개일 경우”에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자어이다. 그러나 ‘여러 개일 경우’라는 뜻의 일반적인 언어로써 법조문 특유의 권위적인 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문법상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이를 ‘여러 개’로 순화할 수 있다(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 2 제2항/제179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

* 『비송사건절차법』

제 3 조 (우선관할·이송)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순화안>

제 3 조 (우선관할·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 부 → 남편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에서는 부부재산약정 등기의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문에서는 한글로만 ‘부’로 표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라는 단어가 남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아내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서 한글과 동시에 한자를 표기해줘야 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이 조문은 남편을 의미하는 ‘부(夫)’로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남편’이라는 쉬운 단어가 존재한다. 따라서 간단하게 ‘남편’으로 표시하면 더 나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을 ‘부(夫)’ 또는 ‘남편’으로 표기하면 양성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는 양성평등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개정이 요구될 수도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 (관할등기소) ①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입부혼의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순화안>

제68조 (관할등기소) ①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입부혼의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③ 수종(數種) → 여러 종류

수종은 ‘여러 가지의 종류’를 의미하는 말로,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다. 간단하게 ‘여러 종류’ 또는 ‘여러 가지’라는 말로 순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표현 또한 법률조문의 권위적인 면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조문에서 나타나는 권위적인 성격을 일반인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지배인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① 지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로 수종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규정
- ② 생략

<순화안>

제179조 (지배인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① 지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로 여러 가지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규정
- ② 생략

*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사건의 병합) ①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수개의 기여분결정 청구 사건은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

②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12조 (사건의 병합) ①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여러 개의 기여분결정 청구 사건은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

②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④ 수인(數人) → 여러 사람

『비송사건절차법』 제27조의 “...수인...”도 위와 같은 이유로 “...여러 사람...”으로 순화할 수 있다 (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151조／／『가사소송법』 제47조／／『가사소송규칙』 제62조／제110조／제112조 제3항／제115조 제3항).

*** 『비송사건절차법』**
第27條 (비용의 공동부담)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規定은 費用을 부담할 者가 수인인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순화안>
第27條 (비용의 공동부담)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規定은 費用을 부담할 者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가사소송법』 중 가사비송사건**
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민사소송법』중에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순화안>
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중에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가사소송규칙』**
제62조 (입양동의등에 대한 허가)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의 심판을 할 때에는 후견인을 제외한 피후견인의 최근친 친족(동순위자가 수인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순화안>
제62조 (입양동의의등에 대한 허가)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의 심판을 할 때에는 후견인을 제외한 피후견인의 최근친 친족(동순위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⑤ 비치(備置)하다 → 갖추어두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1조에서 “등기소에는 법인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상업등기로서 권리의 주체에 관한 등기인 점에서 권리의 객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다르다. 상업등기(Commercial Registration)라는 것은 『상법』·『비송사건절차법』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회사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말한다. 그리고 ‘비치하다’의 의미는 ‘마련하여 갖추어 두다, 놓아두다, 보관하다’라는 의미로 어떠한 법률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상의 ‘備する’를 번역한 것이고, 엄연히 우리말의 ‘보관하다’ 또는 ‘마련하여 갖추어 두다’란 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병행사용용어로서 법제처에서 규정하기²²⁾를 ‘갖추어두다’라는 순화안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간단히 ‘갖추어두다’라는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136조／／『가사소송규칙』 제39조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61조 (등기부의 비치) 등기소에는 법인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61조 (등기부의 갖추어 둘) 등기소에는 법인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하여야 한다.

* 『가사소송규칙』

제39조 (부채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①생략

②부채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부채자의 재산관리 사건에 관하여 부채자별로 심판의 청구와 그에 대한 심판의 요지를 기재한 사건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생략

22) 법률용어순화정비편람(제2집/하) - 병행사용용어 -, 법제처, 2003, 187쪽.

<순화안>

제39조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① 생략

②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 사건에 관하여 부재자별로 심판의 청구와 그에 대한 심판의 요지를 기재한 사건부를 작성,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생략

⑥ 부기(附記)하다 → 덧붙여 적다 (명사형: 덧적기)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3항 및 제242조 제3항에서는 “법원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 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부기는 덧붙여서 적는다는 의미인데, 이는 전형적인 한자식표현이다. 명사형으로 표현한다면 ‘덧적기’²³⁾로 할 수 있다.

제18조 (재판의 고지)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8조 (재판의 고지)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242조 (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뜻을 **부기한 후** 이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3)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 제2집/하, 2003, 법제처, 172쪽.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순화안>

제242조 (등기관외의 조치) ① 생략

② 생략

③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뜻을 덧붙여 적은 후 이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⑦ 소명(疏明) → 해명하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에서 “『상법』 제306조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 의미에서 소명이란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 주장의 확실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의 제출 그리고 설명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심증(心證)을 의미한다.²⁴⁾

따라서 이 용어는 ‘해명(解明)’으로 순화할 수 있겠다(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111조／／『가사소송규칙』 제21조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상법」 제306조(동법 제425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받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상법」 제306조(동법 제425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해명하고 받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03조 (사원초과의 인가신청) 「상법」 제5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사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후인 경우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다.

24)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2000년.

<순화안>

제103조 (사원초과의 인가신청) 「상법」 제5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그 사유를 **해명하고** 총사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인 경우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다.

⑧ ‘~ㄴ 자(者)’ → ‘~ ㄴ 사람’

『가사소송법』 제44조는 가정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제44조 제3호의 ‘공동의 자’를 한자 없이 한글로 표현할 때, 이 곳에서 말하고 있는 ‘~ㄴ 자’와 혼동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녀’를 의미하는 ‘자(子)’는 한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고, 동시에 ‘~ㄴ 자’의 표현은 ‘~하는 사람’이라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순화시킨다면 두 한글에 대한 의미가 앞으로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그리고 종래의 법은 규제하는 법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에 따른 권위적 언어의 사용이 법조문에서 한자어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일반인들에게 위압감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ㄴ 자’이다.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많이 순화된 사항이다. 그 예로서는 ‘~ㄴ 자’ 표현들이 ‘~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는 우리 법률문화를 한 차원 높여주는 민주적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⁵⁾ 이러한 예를 본보기로 하여, 그리고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도 변화시켜 순화할 사항이다. 동법 제121조에서 “... 해당하는 자...”, “...상실된 자...” 그리고 “...받은 자...” 등의 표현을 볼 수 있다. 이들을 각각 “해당하는 사람”, “상실된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으로 순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률문화를 높여주는 표현이 될 것이다(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 제1항/제151조/제166조/제167조 제1항/제233조 제1항/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9조/제244조/제247조//『가사소송법』 제37조/제44조 제4호/제44조 제4호//『가사소송규칙』 제22조 제2항/제32조 제2항/제34조/제35조/제

25) 박갑수, 앞의 논문, 24쪽.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36조/제38조 제2항/제73조 제2항/제77조/제83조/제85조/제88조/제94조 제3항/제99조 제2항/제101조 제2항/제102조/제103조/11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 6 조 (대리인) ①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순화안>

제 6 조 (대리인) ①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가사소송법』 중 가사비송사건**

제37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①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순화안>

제37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①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가사소송규칙』**

제65조 (후견인의선임·변경)

- ①후견인을 선임함에는 **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생략
- ③생략

<순화안>

제65조 (후견인의선임·변경) ①후견인을 선임함에는 **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생략
③생략

(라) 복합적 한자어의 분할과 순화

① 제3자(第三者) → 제삼자

법조문에서 흔히 사용되는 ‘제3자’라는 것은 일반 사회생활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와 법률관계가 있는 제삼자(第三者)를 일반적 사회생활관계상의 제3자와는 구분된다. 예를 들면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제삼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를 뜻하게 된다. 따라서 『비송사건절차법』 제47조 제1호에서 나타나는 ‘3채무자’는 당해 사건에 관계있는 제삼자로서 법률관계의 용어로서 ‘제삼채무자(第三債務者)’로 표시해야 한다(그 외 『가사소송규칙』 제94조)

* 『가사소송규칙』

제24조 (기록의 열람등)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작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순화안>

제24조 (기록의 열람등)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삼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생략

* 『비송사건절차법』

제47조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과 그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표시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순화안>

제47조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와 **제삼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과 그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표시

② 개인(改印) → 인감의 변경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제1항 제2문에서 ‘개인’이라는 용어가 나타난다. 이는 개인(改印), 즉 인감도장의 변경을 의미한다. 이 또한 한글로만 나타내면 그 의미가 불분명해져서, 반드시 한자와 함께 표기되어야 할 것이지만, 용어의 순화 차원에서 ‘인감의 변경’이라고 해도 그 의미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개인(改印)’이라는 용어는 ‘인감의 변경’으로 표기해도 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인감의 제출) ① 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순화안>

제156조 (인감의 제출) ① 등기의 신청서에 **확인**할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일본어식 용어의 순화

① 검사역(檢査役) → 검사인(檢査人)

일본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手續法)제71조의8에서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은 신탁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법원이 검사역을 선임한 경우에 이것을 준용한다(第七十一條ノ八 第三十七條乃至第三十九條ノ規定ハ信託法第四十一條第二項ノ規定ニ依リ裁判所ガ檢査役ヲ選任シタル場合ニ之ヲ準用ス)”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로 부터 검사역이라는 용어가 일본어에서 빌려왔음을 알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부터 제77조를 보면 단순히 ‘검사인’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검사인의 개념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서 또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업무재산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직무로 하는 임시적 감사기관, 상설기관이 아닌 점에서 감사와 다르며 계산의 정부(正否)라든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한다. 발기인·이사·소수주주·청산인·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선임되는 자(상298·299·467·582①, 비송73~81)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자가 있다(상366③·367). 전자의 경우 검사인은 단순히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직으로서 법원이 선임하여 보수를 결정하며(비송77·78), 후자의 경우는 회사와 준위임의 관계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에서이런 ‘검사역’이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기를 “제74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신탁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한다. 여기서 신탁법상의 법률용어의 순화필요성이 있음을 법규정 스스로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사역이란 검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검사인(檢査人)’ 또는 ‘검사원(檢査員)’으로 순화²⁶⁾할 수 있다.

26)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2000년.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따라서 여기서는 표제어부분에서 검사인임을

임을 나타내면서, 본문의 검사역은 신탁법상의 용어임을 나타내므로, 그대로 검사역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우선적인 선결과제는 신탁법상의 ‘검사역’을 ‘검사인’으로 순화시키는 것이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 (검사역) 제74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에게 이를 준용한다.

<순화안>

제44조 (검사인) 제74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② 이기(移記) → 옮겨 적음

『비송사건절차법』 제162조에서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는 …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이기(移記)’는 옮겨 적는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일본어에서 빌려온 것이다. ‘이록(移錄)’과 동의어이다. 이는 2003년 법제처에서 권장사용 용어로서 지정한 사항이다. 이 이외에도 『건축법시행령』, 『공항시설 관리권 등록령』,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등에서 순화되어야 할 내용이다. 이를 우리나라 언어로 순화하면 간단히 ‘옮겨 적음’으로 할 수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62조(등기의 이기)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만을 **이기**해야 한다.

<순화안>

제162조 (등기의 옮겨 적기) 등기를 **옮겨 적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옮겨 적어야** 한다.

4.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법조문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점은 우리나라 법조문을 외국어로 다시 번역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언어의 기본구조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로 되는 것이 기본적인 체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도치, 생략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 표현을 달리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로 비문법적인 문장, 예를 들면 문장성분의 호응, 능동과 피동, 시제, 조사 등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로 법률문장에는 주로 복문의 형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현방법이 법률문장의 이해를 저해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는 어색한 문장과 표현을 찾아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또는 순수한 국어를 사용하여 순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색한 한자어 또는 번역어투의 부자연스러운 문장과 표현이 있고,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1) 비문법적 문장

1) 문장성분에 의한 혼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어가 생략되거나 중복되어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문장에서 나타난다.

① 주어생략으로 인한 혼란

일반 법률문장에서는 주어 없이도 그 의미를 전달하고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는 문장들이 많다.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법』 제4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따르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에서 누가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법률규정의 명확성 면에서 이 조문은 아주 위험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된 내용에 유추하여 볼 때, 그 주체는 동법 제42조의 의미상 ‘이해관계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2항에서 주어가 추가로 삽입되어야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42조 (선임·개임의 재판) ①법원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순화안>

제42조 (선임·개임의 재판) ①법원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그 이해관계인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 능동과 피동과 같은 태(態)의 혼란이 있는 문장

능동과 피동의 혼란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에서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조문에서 나타나는 ‘이를’이라는 목적어는 앞의 주어와 반복된다. 따라서 본 문장은 단문의 형식으로서 ‘이를’이라는 목적어는 불필요한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본 조문에서는 ‘이를’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하며, 또한 이 조문에서 나타나는 주어역할을 하는 ‘규정’이란 단어는 무생물이며, 또한 ‘사건’이 그 대상으로 된다. 따라서 국문법에 맞게 씌어진다면 “...규정은 사건에 준용된다.”고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피동태의 문장으로 씌어져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문장은 곳곳에서 많이 보인다(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제23조/제56조/제60조

4.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제2항/제66조 제2·3항/제67조/제83조/제84조 제2항/제84조의2 제2항/제86조의2 제3항/제87조/제89조/제90조/제92조/제99조/제100조/제105조/제106조/제112조/제113조 제3항/제114조 제2항/제115조/제116조/제120조/제143조 제2항/제144조 제3항/제168조 제3항/제178조 제1항/제179조 제2항/제200조/제201조 제2항/제209조 제2항/제216조의2 제2항/제217조/제218조 제2항/제227조 제2항/제238조의4 제1항//『가사소송법』 제34조/제35조//『가사소송규칙』 제48조 제2항/제58조/제59조/제78조/제95조 제2항/제98조/제105조/제108조/제115조 제3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법원직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순화안>

제5조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법원직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준용된다.

* 『가사소송법』 중 가사비송사건

제34조 (준용법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순화안>

제34조 (준용법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 『가사소송규칙』

제48조 (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①생략
②제47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순화안>

제48조 (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①생략
②제47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 준용된다.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3) 조사가 짝이 맞지 않거나,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운 문장

① 주격조사로의 변화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제2항 “사문서에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이는 사문서(私文書)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조문이다. 이 경우에는 주격조사로 변환을 시킨다면 좀 더 쉬운 표현이 된다. 즉, ‘사문서(私文書)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표현하면 이해가 더 빠르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 7 조 (대리권의 증명) ①「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은 제6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사문서에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순화안>

제 7 조 (대리권의 증명) ①「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은 제6조의 경우에 준용된다.

②사문서(私文書)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잘못된 조사의 사용

첫째로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를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상법」 제600조 제1항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합병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는 “「상법」 제60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합병을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표제는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서의 합병허가신청’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오류로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합병허가신청’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서의 합병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04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합병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로, 잘못된 주격조사를 사용한 경우이다. 즉 피동인지 능동인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법률문장이 존재한다. 예컨대 「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 제1항은 “「상법」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응 이해가 쉽고 아무런 오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어형식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 (사채모집위탁의 보수등 부담허가신청) ① 「상법」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순화안>

제114조 (사채(社債)모집위탁의 보수 \vee 등 부담허가신청) ① 사채(社債)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상법」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된다.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③ 조사의 생략

위의 경우와는 달리, 주어를 사용하여 강조의 의미 또는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표현의 일환으로서 주어를 가리키는 목적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08조 제2문에서 “이 경우 제155조 본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간단하게 “이 경우 제155조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표기해도 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5조 본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순화안>

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5조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목적어의 추가적 사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은 “폐쇄한 등기용지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등기부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를’이란 단어는 불필요한 목적어이다. 따라서 “폐쇄한 등기용지는 … 폐쇄등기부에 편철하여야 한다”고 표기해도 이해와 의미에 전혀 변화가 없다(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168조 제1항/제174조 제1항과 제3항/제175조 제3항/제177조 제1항/제228조/제238조 제1항/제238조의4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폐쇄등기부) ① 폐쇄한 등기용지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등기부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② 폐쇄등기부는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42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순화안>

제145조 (폐쇄등기부) ① 폐쇄한 등기용지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등기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폐쇄등기부는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42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순화안>

제164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다.

6) 명사구의 순화

「가사소송법」 제40조는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으로써’는 수단을 나타내고, ‘~로서’는 어떠한 자격을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론 ‘고지받는 사실’을 수단으로 억지로 끼워맞출 수는 있겠지만,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따라서 이를 ‘고지받음과 동시에’ 또는 ‘고지받으면’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해가 더 빠르다.

* 「가사소송법」 중 가사비송사건

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시기) 심판은 이를 받을 자가 고지받음 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순화안>

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시기) 심판은 이를 받을 자가 고지받으면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2) 복문의 단문화

① 문장의 재구성

법조문 속에서 두 개의 정보를 담으려고 의도하는 경우에 그 문장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나누어 표현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비송사건절차법』 제 4 조 제2항의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의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관할법원지정은 직근상급법원이 한다는 것’과 ‘그 지정은 관계법원의 신청으로 한다’는 두 가지이다. 이를 다시 풀어서 표현하면,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결정은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이에 대한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48조 후반부의 “...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는 문장도 이러한 이유로 “담보제공의 요구와 함께 또는 담보 없이 허가할 수 있다”로 순화하면 보다 더 간결하고, 이해가 쉬운 문장으로 될 수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 4 조 (관할법원의 지정)

-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순화안>

제 4 조 (관할법원의 지정)

- ① 생략
-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한다. 이 결정은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48조 (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순화안>

제48조 (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담보제공의 요구와 함께 또는 담보 없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주어와 목적어의 중복

이해가 어렵고 복잡한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하여 복문의 구조를 단문구조로 순화시켜서 표현하거나, 불필요한 하나의 문장구성요소를 생략함으로써 문장의 간결화와 이해의 용이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어의 사용 관행상 주어가 두 개가 존재하는 문장은 자주 등장한다. 이는 복문의 형식으로 다시 재구성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의 이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법조문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명확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1항에는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뒷부분의 ‘이를’이라는 단어를 생략해도 이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문장이 간결해지면서, 일반인의 이해가 더욱 쉬워진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①**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 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순화안>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① 법인설립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신청한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 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 『비송사건절차법』

제103조 (사원초과의 인가신청) 「상법」 제5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사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후인 경우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다.

<순화안>

제103조 (사원초과의 인가신청) 총사원은 「상법」 제5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과 그 사유를 해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후인 경우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다.

(3) 문장과 표현 면

1) 의미가 불분명한 점

① 내지(乃至) → ~부터 ~까지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2·3항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즉 “제130조 내지 제132조, 제137조 내지 제148조, …”와 같이, 주로 수량의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얼마부터 얼마까지’라는 뜻이 있으나, ‘양자 중 어느 하나’라는 뜻도 있어서 명확해야 하는 법률문장에 사용하기 곤란하다. 또한 일본어의 내지(乃至)를 음독하여 표현한 것이다. 보통 법률조문에서 이처럼 “제159조 제1호 내지 제12호”라는 규정의 의미는 ‘제159조 제1호 또는 제12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159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뜻을 가진다. 따라서 법률문장에서 ‘내지’라는 표현은 ‘~부터(에서)~까지’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 외 『비송

사건절차법』 제54조/제66조/제71조/제72조/제97조/제101조/제106조/제168조/제171조/제200조/제216조 제2호/제217조/제234조 제1호/제238조/제238조의5//『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제44조 제3호)

*** 『비송사건절차법』**

제71조 (부동산등기법규정의 부부재산약정등기에의 준용) 부동산등기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 제41조, **제55조제1호 내지 제9호**, 제66조, 제71조, 제72조, **제86조 내지 제88조, 제175조 내지 제185조**와 제187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순화안>

제71조 (부동산등기법규정의 부부재산약정등기에의 준용) 부동산등기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 제41조, **제55조** ∨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66조, 제71조, 제72조,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175조부터 제185조까지**와 제187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 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 및 동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3조제2항, 제467조, 제545조제1항 단서, 제582조와 동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②생략
- ③생략

④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순화안>

제72조 (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 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 및 동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3조제2항, 제467조, 제545조제1항 단서, 제582조와 동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6.12.30, 1999.12.31>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②생략
③생략
④「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 (관할) ①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가사비송사건에 **준용한다**.

<순화안>

제35조 (관할) ①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가사비송사건에 **준용된다**.

②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표현으로는 ‘각목의 1’이라는 표현이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그리고 동법 제121조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여기의 의미에서는 각호 중의 첫 번째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항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국어문법에 따른 띄어쓰기와 함께 ‘각호의 1’은 ‘각 호 중 어느 하나’라고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62조 제2항/제107조/제159조/제165조/제185조 제1항/제193조/제199조 제3항/제234조/제235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그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순화안>

제107조 (그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V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③ 월(月) → 개월(個月)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3 제1항은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해에 있어서 …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88조 제1항은 “…확정된 날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두 조문에서 나타나는 ‘12월’과 ‘6월’에서의 월(月)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앞의 ‘12월’은 달력상의 12월(December)를 의미하며, 뒤의 ‘6월’은 기간을 나타내는 말로서 ‘6개월’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88조의 ‘6월(月)’은 ‘6개월’로 순화되어야 한다(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제1항／／『가사소송규칙』 제54조 제2항／제113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등) ①등기관은 등기가 제2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생략

<순화안>

제235조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등) ①등기관은 등기가 제2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V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생략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청구기간의 지정)

- ①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월이상이어야** 한다.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순화안>

제113조 (청구기간의 지정) ①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상당하는 → 해당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송사건에서는 심문의 비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공개원칙에 예외적으로 사건관계인들에게 방청을 허용한다는 취지이다. 이 조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 중에 ‘상당하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 뜻은 법제처 2003년에 발표한 ‘법령용어순화편람’상의 병행하여 사용가능한 단어로서 ‘...에 해당한다’ 또는 ‘(...)원 어치’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간단하게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명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그 사건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방청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사건의 이해관계자를 추가로 적용하여 ‘...에 해당하는’ 으로 순화하여 표현하면 보다 쉬운 표현으로 될 것이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심문의 비공개)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순화안>

제13조 (심문의 비공개)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반복되는 요소의 생략

문장 내의 반복되는 요소를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문장의 구성이나 이해가 더욱 빨라지고 쉬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법률문장에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와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에서 ‘대한민국’이 반복된다. 이 경우 하나로 줄여서 통일시키면 문장이 더 세련되고, 이해가 빨라진다. 즉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지 못할 때’로 간단하게 줄일 수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 2 조 (관할법원)

- ①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②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③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순화안>

제 2 조 (관할법원)

- ①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②거소가 없거나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③최후의 주소가 없거나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2) 어색한 한자어 또는 번역어투의 법률문장

(가) 조사의 중복사용(예 : ~의~의)

일본어 문장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の...の...”를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의 “...의 ...의 ...”로 표현된다. 이러한 표현은 전형적인 번역어투의 법률문장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하나를 생략해도 의미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순화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3조/제24조/제29조 제1항/제32조/제39조/제42조/제45조/제46조/제57조/제64조 제1항/제65조/제74조 제3·4·5·6항/제86조 제1항/제100조/제107조/제146조/제160조/제167조 제3항/제168조 제2항/제168조 제3항/제174조 제2항/제180조 제1항/제181조 제2항과 제3항/제183조/제184조 제2항과 제3항/제186조 표제/제187조/제193조 제1호/제199조 제2항/제207조/제214조의2 제7호/제227조 제1항/제229조 제2항과 제3항/제230조/제231조 표제/제234조 제2항/제235조 표제/제248조 제4항/제250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3호/제46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 2 조 (관할법원) ①**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순화안>

제 2 조 (관할법원) ①**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②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

4.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할법원으로 한다.
③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 4 조 (관할법원의 지정) ①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생략
<순화안>
제 4 조 (관할법원의 지정) ①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생략

(나) 단어생략에 의한 법률문장순화

불필요한 요소의 반복으로 법률문장의 권위를 추구한 흔적이 보이는 문장도 있다. 이러한 문장에서 그러한 요소를 빼고 표현하면 더욱더 세련되고,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예컨대 『비송사건절차법』 제 4 6 조 “...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곳의’라는 표현은 생략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라고 나타내면 간단하고 이해에도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46조 (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순화안>
제46조 (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5. 기 타

(1) 표제어의 법적 구속력

이는 용어순화의 문제와 더불어 항상 제기되는 문제이다. 즉 용어순화로 인하여 본문의 용어가 바뀔에 따라 표제어도 바뀌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법률조문 표제어의 법적 구속력에 관한 문제와도 관련이 있게 된다. 법조문의 표제어 작성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이므로 입법자의 의사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 또한 법률의 일부분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해당 법률에서 우선적으로 표제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부동산등기법을 예로 들어보면 그 이해가 빠를 것이다. 1960년 1월 1일자 부동산등기법²⁷⁾ 제17조의 표제는 그 당시 “등기부의 간인(間印)”이라고 표기했었다. 그리고 조문의 규정은 “등기부에는 지방법원장은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직,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압날한 후, 각 장의 철목에 직인으로써 간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1983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된 동법 제17조는 “등기부의 날인”이라는 표제 하에 “등기용지에의 날인”으로 “등기용지에는 지방법원장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로 개정되어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표제어 부분만을 본다면 “간인→날인”으로 개정되었고, 법조문 속의 내용은 “간인→직인압날→직인을 찍다”의 순서로 점점 우리 고유의 언어로 순화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표제어 부분에서는 여전히 “날인”을 사용하고 있다. 법조문의 개정에 따라 표제어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비송사건절차법』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 및 규칙에서 순화의 대상으로 지적하였던 표제들

27) 1960년 1월 1일자 『부동산등기법』(법률 536호).

도 그 순화의 대상이다(예컨대, 『비송사건절차법』 제58조 표제/제81조 표제/제186조 표제/제231조 표제/제235조 표제 등).

이와 관련해서 『가사소송규칙』 제3절의 표제와 법조문 내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99조 및 제100조의 본문에서는 개정을 통하여 충실하게 자(子)로 순화시켰다. 그러나 표제의 부분, 즉 ‘제3절 친권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제100조의 표제 ‘자의 의견의 청취’는 개정이 되지 않았다. 표제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본문개정에 따라 표제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가사소송규칙』**

제 3 절 친권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제99조 (당사자) ①자(子)의 ……………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 자(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0조 (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제1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자)가 15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화안>

제 3 절 친권자의 지정과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건

제99조 (당사자) ①자(子)의 ……………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 자(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0조 (자(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제1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자)가 15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지되어야 할 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6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3조에서는 문자기재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자획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 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③ 문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붙이고 그곳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의미하는 문자는 한자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등기부 또는 기타 신청서에 한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었던 관계로 한자의 자획이나, 그의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었던 흔적조문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용어현대화 시책이나 순화정책에 반하는 조문이며, 지금은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조문이다. 따라서 삭제되어야 할 조문이다.

(3) 법령이름 띄어쓰기²⁸⁾

법령이름의 붙여 쓰기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의 “국회법률안 입안기준”에서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이름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쓰고 있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서, 그 가독성(可讀性) 또는 이해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국회의 법률안 입안 및 심사와 의안정리에 필요한 용어·조문의 구성 등에 관하여 표준화된 우리말과 한글맞춤법에 따른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사무처 예규에 따르면, 기존 법령이름에 대하여 붙여서 표현하던 것을 국문법에 따른 띄어쓰기에 맞춰서 서술하여야 하며, 법문 중 법령이름, 즉 법률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첫 글자 앞과 끝글자 뒤에 낫표(ㄱ)를 붙여서 표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8) 법제처와 국립국어원과의 협의 하에 위의 띄어쓰기 기준이 마련되었음; 홍승진, 법률제명 띄어쓰기 추진경과, 월간법제 2005년 1월호, 제3쪽의 표

제·개정되는 법령부터는 그 법령이름에 대하여 띄어쓰기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다음과 같이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1) 띄어쓰기 기준설정

① 기 준

(가) 법령명은 단어 별로 띄어 쓴다. 법령 명칭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 명사 앞(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오지 않으면 의존 명사 뒤에서도 띄)에서 반드시 띄어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어미, 부사, 의존 명사가 없이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예외적으로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및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쓴다.

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다)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 도 하나의 명사적 성격을 갖고, 명칭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 8음절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과 달리 ‘시행령’, ‘시행규칙’은 띄어쓰기로 한다.

(라)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이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름의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낫표(「 」)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 본문의 문장 내용과 구분할 수 있고, 법이 하나의 고유명사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는 법령이름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유한 법령이름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①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

-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
- 『액화석유에 관한 법률』

(마) 띄어쓰기 대상이 아닌 붙여쓰기로 표기하는 법령의 경우에도 본문에서 인용되는 경우 예외 없이 그 앞뒤에 낫표를 사용한다.

예시) 『민법』 『증권거래법』 『도로교통법』

(바)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이름이 아닌 경우, 즉 법령집에서의 법령 제목,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서는 낫표를 부기하지 아니한다.

예시)

- (i)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지시문)
- (i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²⁹⁾
- (iii)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공포문)

2) 제명 띄어쓰기 표기의 예시

① 조사와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9) 국립국어원의 의견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한 번에 독해할 수 있는 적당한 음절의 수는 8음절 내외라고 함.

② 부사를 포함한 법령명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이는 ‘미술관진흥법’은 모두 명사이지만, ‘진흥법’이 ‘박물관’과 ‘미술관’ 양쪽에 걸리는 성분이므로, ‘미술관’과 ‘진흥법’을 띄어 쓰도록 한다.

③ 의존 명사를 포함한 법령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④ 부사, 의존 명사, 조사,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호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³⁰⁾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따른∨시설과∨구역∨및∨주한미군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⑤ 8음절을 넘는 명사로 이루어진 법령명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30)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법률이름.

IV.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순화의 내용

여기에 나타난 예문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보통의 경우를 말하는 8음절이 넘는 10음절이나,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복합명사이므로 예외적으로 붙여쓰기 인정한다.

3) 개정법령의 경우, 그 명칭 표기방식의 개정

기존 법령개정의 경우, 부분개정인 경우에는 “○○○법중개정법률안”, 전문개정의 경우 “○○○법개정법률안”으로 표시하였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붙여서 나열하듯이 표기하면 일반국민에게는 이러한 구분이 있고, 또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개정법령 또는 전문개정의 표기를 명확히 하여 그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이 있다.

① 현행 기준

- 부분개정의 경우
“○○○법중개정법률안”,
- 전부개정의 경우
“○○○법개정법률안”

② 개선된 표기방법

- 법령의 부분개정의 경우 :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으로 표시
- 법령의 전문개정의 경우 :
“○○○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으로 표시

4) 개정법령명칭 표기방식의 세부 실무적 시행사항

위에서 언급했던 법령이름 띄어쓰기는 어떠한 법률의 형태로 결정난 사항이 아니다. 단지 실무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앞으로 관행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법률화를 목적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위의 사

항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정부부처 실무차원에
서의 예규사항은 앞으로의 동향이나 지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실무지침사항²⁹⁾**

- (i)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어 공포되는 법령부터 실시하기로 한다.
- (ii) 최초로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법령안건의 결재표지, 의결주문, 개정지시문, 의결
주문, 공포문 등에서는 현행대로 붙여쓰기로 표시하고 (낫표를 부기하지 않음) 이
후 띄어쓰기가 적용된 다음에는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예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
일 처음 만드는 개정안의 의결주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
다. (이후 개정시 의결주문)
- (iii) 법령안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개정문을 만
들어 주되, 다른 부분의 개정이 없이 단순히 법령제명의 띄어쓰기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문의 맨 뒤에서 일괄개정방식으로 처리하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 (iv) 띄어쓰기 대상이 아닌 붙여쓰기로 표기하는 법령의 경우에도 낫표를 부기하는
방식으로 개정문을 각각 만들어 주고, 현재 국한문을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는 법
률의 경우, 한자는 한글로 변경하여 개정문을 만든다.
예시) 제54조의6 제1항 본문 중 “商法”을 “『상법』”으로 한다.
- (v) 적용범위
- 조약의 명칭(법령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약명도 포함)도 법률의 명칭 띄어
쓰기 기준에 준하여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 법제처의 심사를 받는 대통령 훈령 및 국무총리 훈령의 경우, 위 기준에 준하
여 표기한다.
-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독자적으로 제정·
시행하는 예규·훈령 등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준하여 띄어쓰기로 표
기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31) 법제처, 2004년 9월 13일 “제명띄어쓰기 실시안내” 참조.

V. 결 론

비법률가로 하여금 법률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전문가에 의한 이해하기 쉬운 법률의 보급이 그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해하기 쉬운 법률의 기준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기존 전통적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전근대적인 관료주의를 근거로 하여 형성된 법률문장들은 한문의 사용을 당연시 했고, 가능한 한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근대 봉건주의 사상 하의 신분제도라는 틀 안에서 법의 제정과 법의 집행은 특정 계급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서는 안 되고, 어렵게 보여야 하며, 그 문장은 일반 문장과는 다른 특별한 문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어렵게 표현된 법률용어 및 문장의 순화라는 것은 다른 한편 기존 전근대적인 관료주의의 타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법률이 형성되어 왔고, 사회발전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관계로 외국의 법률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봉건주의가 붕괴된 지 1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그 뿌리가 깊게 남아있다. 이렇게 본다면 법률분야가 가장 보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이러한 보수적인 부분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수립 이래 계속되어 왔지만, 법률분야를 비롯한 기타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너무도 미약한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쉬운 법령 만들기’라는 것도 위에서 언급한 높은 문턱의 법률문화를 좀 낮추려고 하는 노력의 한 부분이다. 쉬운 법령 만들기와 관련해서 늘 드는 예이지만, 1995년 1월 5일 제정의 「음용수관리법」이 한글로 바뀌면서 현행의 「먹는 물 관리법」으로 그 이름이 바뀐 것은 쉽고, 친근한 법률표기의 이상적인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V. 결 론

따라 모든 법령에 걸쳐 이러한 순수한글화를 이루어 일반인의 법률에 대한 보다 쉬운 접근가능성을 이룰 수 있다면 법령한글화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법률이란 것이 어느 한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현상으로서 사회 모든 분야에 톱니바퀴 또는 그물망처럼 서로가 얽여져 있어서, 하나의 법률을 가지고 순화를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을 먼저 순화시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개정『민사소송법』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아직 『민법』, 헌법, 형법 등의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법령용어에 대해서는 이미 토착화되었다는 이유로 누구도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순화의 노력도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법률의 최전방에 서 있는 법관들의 판결문도 그 문장과 용어 사용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결문은 일반인이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이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법관들이 기울여야 할 또 다른 순화의 과제는 단순하게 문법적으로 틀렸다 또는 과도한 한자말의 사용의 자제와 일본식표현의 한국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법해석론상의 문제이다. 쉽게 쓰다보면 문장 또는 용어의 순화와 법률해석이 또 중요한 논쟁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제처에서 행한 법령한글화와 관련한 인터넷 설문조사결과로서 나타난 찬성의견, 즉 설문자들의 압도적 다수로 찬성을 이루었다는 한글화를 위한 일괄개정의 원칙에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이다.

따라서 법률문장과 용어의 순화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씩 검토해 가면서 순화와 그에 따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한

글화나 일본식한자의 한글화를 뛰어 넘어, 우리에게 맞고 이해가 쉬운 용어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우리 고유의 법률문화가 성립되어 가리라 믿는다. 이러한 염원으로 이 연구의 결과도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부 록 》

「비송사건절차법」 및
가사비송사건 관련조문의
순화대비표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 행	순 화 안
제 1 편 총 칙	
<p>제 1 조 (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p>	없고 같음
<p>제 2 조 (관할법원) ①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u>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u> ②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p>	<p>①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u>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u> ②거소가 없거나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최후의 주소가 없거나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p>
<p>제 3 조 (우선관할·이송)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u>최초의 사건의 신청</u>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p>	<p>관할법원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u>최초 사건의 신청</u>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 있다.</p>
<p>제 4 조 (관할법원의 지정) ①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①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한다. 이 결정은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제 5 조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법원직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u>이를 준용한다.</u></p>	<p>법원직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u>준용된다.</u></p>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 행	순 화 안
<p>제 6 조 (대리인) ①사건의 관계인은 소송 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① 옆과 같음 ②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제 7 조 (대리권의 증명) ①『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은 제6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사문서에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①『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은 제6조의 경우에 준용된다. ②사문서(私文書)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제 8 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 『민사소송법』 제161조의 규정은 신청 및 진술에 이를 준용한다.</p>	<p>제 8 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 『민사소송법』 제161조의 규정은 신청 및 진술에 준용된다.</p>
<p>제 9 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4. 신청의 년월일 5. 법원의 표시 ②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①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1. - 5. 옆과 같음 ② 옆과 같음</p>
<p>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기일·기간·소명방법·인증과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p>	<p>기일·기간·소명방법·인증과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준용된다.</p>
<p>제11조 (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현행	순화안
<p>②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p> <p>③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u>년월일</u>을 재판의 원본에 <u>부기하고</u> 이에 <u>날인</u>하여야 한다.</p>	<p>②옆과 같음</p> <p>③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u>년월일</u>을 재판의 원본에 <u>덧붙여 적고</u> 이에 <u>확인</u>하여야 한다.</p>
<p>제19조 (재판의 취소·변경) ①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p> <p>③즉시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p>	<p>옆과 같음</p>
<p>제20조 (항고) ①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u>침해당한 자</u>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p> <p>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p>	<p>①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u>침해당한 사람</u>은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p> <p>② 옆과 같음</p>
<p>제21조 (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p>	<p>옆과 같음</p>
<p>제22조 (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23조 (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u>이를 준용한다</u>.</p>	<p>『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u>준용된다</u>.</p>
<p>제24조 (비용의 부담)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사건 신청인의 부담</u>으로 한다. 그러나 <u>검사가</u>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p>	<p>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사건의 신청인의 부담</u>으로 한다. 그러나 <u>검사(檢事)</u>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p>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p>제25조 (비용액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의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p>	<p>순 화 안</p>
<p>제12조 (추진할 정할 것에 관한) 액을 확정</p>	<p>옆과 같음</p>
<p>화환, 사건에 대한 합의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p>	<p>옆과 같음</p>
<p>제13조 (심문의 비공개)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13조 (심문의 비공개)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14조 (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p>	<p>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p>
<p>제15조 (검사의 의견진술, 참여) ①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16조 (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기타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17조 (재판의 방식) ① 생략 ②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같음할 수 있다. ③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④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같음할 수 있다.</p>	<p>옆과 같음</p>
<p>제18조 (재판의 고지) ①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p>	<p>① 옆과 같음</p>

현행	순화안
<p>제26조 (관계인에 대한 비용부담의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p>	<p>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사람이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p>
<p>제27조 (비용의 공동부담)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은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은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 준용된다.</p>
<p>제28조 (비용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옆과 같음</p>
<p>제29조 (비용채권자의 강제집행) ①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③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8조와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①옆과 같음 ②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제1항 강제집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③옆과 같음.</p>
<p>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부담)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채당하여야 한다.</p>	<p>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빌려줘야 한다.</p>
<p>제31조 (신청의 정의) 이 편에서 “신청”이라 함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p>	<p>옆과 같음</p>
<p>제 2 편 민사비송사건 제 1 장 법인에 관한 사건</p>	
<p>제32조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의 관할) ①『민법』 제44조에 관한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p>	<p>(재단법인 정관∨보충 사건 관할) ①『민법』 제44조에 관한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p>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 행	순 화 안
<p><u>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u>로 하고, 동법 제17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u>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u>로 하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u>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u>로 한다.</p> <p>②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u>유언자의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u>로 한다.</p>	<p><u>주소지의 지방법원 관할</u>로 하고, 동법 제17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u>전수탁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관할</u>로 하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 <u>주소지의 지방법원 관할</u>로 한다.</p> <p>②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u>유언자 최후의 주소지 지방법원 관할</u>로 한다.</p>
<p>제40조 (법원의 감독) ①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기타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옆과 같음</p>
<p>제41조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개임·사임) ①법원은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p> <p>②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42조 (선임·개임의 재판) ①법원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신탁관리인 또는 <u>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u>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①옆과 같음 ②<u>그 이해관계인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재판</u>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제43조 (『민법』규정의 준용)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와 제688조의 규정은 법원이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옆과 같음</p>
<p>제44조 (검사역) 제74조, 제77조와 제78조</p>	<p>(<u>검사인</u>) 제74조, 제77조와 제78조의</p>

<p>의 규정은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선임한 검사에게 준용된다.</p>	<p>규정은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선임한 검사인에게 준용된다.</p>
<p>제33조 (해산·청산의 감독의 관할) ①임지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p>	<p>제33조 (해산·청산 감독의 관할) ①임지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p>
<p>제34조 (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①『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① 옆과 같음 ②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준용된다.</p>
<p>제35조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법인에 대한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事)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36조 (청산인) 제117조제1항, 제119조와 제121조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인에게 이를 준용한다.</p>	<p>제117조제1항, 제119조와 제121조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인에게 준용된다.</p>
<p>제37조 (청산인·검사인의 보수)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각각 준용된다.</p>
<p>제38조 (감정인의 선임비용등) 제124조와 제125조의 규정은 『민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감정인의 선임비용등) 제124조와 제125조의 규정은 『민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 2 장 신탁에 관한 사건</p>	
<p>제39조 (관할법원) ①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수탁자의</p>	<p>①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수탁자</p>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 행	순 화 안
<p>제51조 (항고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담자를 정한다.</p>	<p>옆과 같음</p>
<p>제52조 (심리의 공개, <u>검사의</u> 불참여)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심리의 공개, <u>검사(檢事)의</u> 불참여)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 4 장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p>	
<p>제53조 (공탁소의 지정,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민법』 제4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p>	<p>옆과 같음</p>
<p>제54조 (공탁물보관인의 개입·<u>선임등</u>) 제41조, 제42조제2항과 『민법』 제694조 <u>내지</u> 제697조 및 동법 제700조의 규정은 제53조의 보관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민법』 제69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p>	<p>(공탁물보관인의 개입·<u>선임</u>등) 제41조, 제42조제2항과 『민법』 <u>제694조부터 제697조까지</u> 및 동법 제700조의 규정은 제53조의 보관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민법』 제69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p>
<p>제55조 (경매대가의 공탁) 제53조의 규정은 『민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에 이를 준용한다.</p>	<p>옆과 같음</p>
<p>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u>이를 준용한다.</u></p>	<p>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u>준용된다.</u></p>

<p>②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p>	<p>②옆과 같음 순 화 안</p>
<p>제 3 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p>	
<p>제44조 (검사역) 제74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u>검사역</u>에게 이를 준용한다.</p>	<p>(검사인) 제74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u>검사인</u>에게 <u>준용된다</u>.</p>
<p>제45조 (재판상의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u>자기의 채권의 기한전에</u>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p>	<p>(재판상의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u>자기 채권의 기한 전</u>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46조 (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u>곳의 지방법원의 관할</u>로 한다.</p>	<p>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u>지방법원 관할</u>로 한다.</p>
<p>제47조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과 그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표시</p>	<p>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와 제삼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옆과 같음</p>
<p>제48조 (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u>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u>할 수 있다.</p>	<p>법원은 대위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u>담보제공의 요구와 함께 또는 담보 없이</u> 허가할 수 있다.</p>
<p>제49조 (재판의 고지) ①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p>	<p>옆과 같음</p>
<p>제50조 (즉시항고) ①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p>	<p>옆과 같음</p>

현행	순화안
<p>제64조 (변경의 등기) ①법인의 사무소의 신설·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②임시이사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① 법인 사무소의 신설·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옆과 같음</p>
<p>제65조 (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65조의2 (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65조의3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해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을 관할구역안의 신문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②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이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①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해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을 관할구역안의 신문▽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②옆과 같음</p>
<p>제65조의4 (신문공고에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공고를 위한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상의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의 게시관에 공고할 수 있다.</p>	<p>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공고를 위한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상의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의 게시관에 공고할 수 있다.</p>
<p>제66조 (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 ①제130조 내지 제132조, 제137조</p>	<p>①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7조부터 제148조까지, 제150조제1항 및 제</p>

<p>내지 제148조 제150조 제1항 및 제2항, 제151조, 제152조, 제156조 내지 제158</p>	<p>2항, 제151조, 제152조, 제156조부터 제</p>
<p>제57조(환대권대위행사의 감정인의 선임) ①『민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은 <u>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u>로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p>	<p>158조까지, 제159조제1호부터 제17호 (환대권대위행사의 감정인 선임) ①『민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은 <u>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u>로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p>
<p>제58조(검사의 불참여) 제15조의 규정은 본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검사(檢事))의 불참여) 제15조의 규정은 본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옆과 같음</p>
<p>제 5 장 법인의 등 기</p>	
<p>제60조(관할등기소) ①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u>이를 준용한다</u>.</p>	<p>①옆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u>준용된다</u>.</p>
<p>제61조(등기부의 비치) 등기소에는 법인등기부를 <u>비치</u>하여야 한다.</p>	<p>(등기부의 <u>보관</u>) 등기소에는 법인등기부를 <u>보관</u>하여야 한다.</p>
<p>제62조(이사·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u>각호</u>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 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p>	<p><u>①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신청한다</u>.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u>각호의 서류</u>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옆과 같음</p>

현행	순화안
<p>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부재산 약정서 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71조 (부동산등기법규정의 부부재산약정등기에의 준용) 부동산등기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 제41조, 제55조제1호 내지 제9호, 제66조, 제71조, 제72조, 제86조 내지 제88조, 제175조 내지 제185조와 제187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p>	<p>부동산등기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 제41조, 제55조 ∨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66조, 제71조, 제72조,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175조부터 제185조까지와 제187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 3 편 상사비송사건 제 1 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p>	
<p>제72조 (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 및 동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3조제2항, 제467조, 제545조제1항 단서, 제582조와 동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p> <p>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의 관할로 한다.</p> <p>③ 「상법」 제619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영업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p> <p>④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p>	<p>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 및 동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3조제2항, 제467조, 제545조제1항 단서, 제582조와 동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p> <p>② 옆과 같음</p> <p>③ 「상법」 제619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영업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p> <p>④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p> <p>⑤ 「상법」 제70조제1항과 동법 제804</p>

<p>점소제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 「상법」 제70조제1항과 동법 제804</p>	<p>순화안 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소</p>
<p>제161항에 관한 제161조제1항 제161조제3항 내지 제161조제3항 내지 제161조제3항의 규정은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49조, 제150조제3항, 제155조, 제184조 내지 제186조와 제189조의 규정은 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228조 내지 제231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61조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161조부터 제163조까지와 제232조부터 제246조까지의 규정은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49조, 제150조제3항, 제155조, 제184조부터 제186조까지와 제189조의 규정은 법인의 등기에 준용된다. ③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준용된다.</p>
<p>제67조 (법인등기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등) ①이 법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43조제1항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이 법중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p>	<p>(법인등기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등) ①이 법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43조제1항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이 법중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준용된다.</p>
<p>제 6 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p>	
<p>제68조 (관할등기소) ①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입부혼의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p>	<p>①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옆과 같음</p>
<p>제69조 (등기부의 비치) 등기소에는 부부재산약정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등기부의 갖추어 둠) 등기소에는 부부재산약정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여야 한다.</p>
<p>제70조 (부부재산에 관한 등기신청) ①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부록】 「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 행	순 화 안
<p>제79조 (업무·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u>기간내에</u>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p>법원은 「상법」 제467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u>기간내에</u>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p>제80조 (업무·재산상태의 검사, 총회소집허가의 신청) ① 「상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검사</u>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u>검사</u>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동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① 「상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검사(檢査)</u>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u>검사(檢査)</u>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동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 ② <u>옆과 같음</u></p>
<p>제81조 (업무·재산상태의 <u>검사등</u>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업무·재산상태의 <u>검사등</u>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상법」 제306조(동법 제425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u>소명하고</u> 받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p>	<p>「상법」 제306조(동법 제425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u>해명하고</u> 받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p>
<p>제83조 (<u>단주매각</u>의 허가신청)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동법 제461조제2항과 동법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u>이를 준용한다</u>.</p>	<p>(<u>단주매각(端株賣却)</u>의 허가신청)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동법 제461조제2항과 동법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u>준용된다</u>.</p>
<p>제84조 (직무대행자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86조제2항(동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p>	<p>① 「상법」 제386조제2항(동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p>

<p>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77조, 제78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적용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94조를 준용한다. 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p>	<p>② 제77조, 제78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적용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94조를 준용한다. 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 관할로 한다.</p>
<p>제73조 (검사인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u>기명날인</u> 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u>년월일</u> 4. 법원의 표시</p>	<p>(검사인(檢査人)선임신청의 방식) ① <u>검사인(檢査人)</u>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u>다음의 모든 사항</u>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u>기재확인</u> 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u>년월일</u> 4. 법원의 표시</p>
<p>제74조 (검사인의 보고) ① <u>검사인</u>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u>검사</u>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u>검사인</u>을 심문할 수 있다.</p>	<p>① <u>검사인(檢査人)</u>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u>검사(檢査)</u>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u>검사인(檢査人)</u>을 심문할 수 있다.</p>
<p>제75조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옆과 같음</p>
<p>제76조 (검사인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검사인</u>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p>	<p>「상법」 제4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검사인(檢査人)</u>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p>
<p>제77조 (검사인의 보수)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u>검사인</u>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p>	<p>「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u>검사인(檢査人)</u>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p>
<p>제78조 (즉시항고) 제76조와 제77조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p>	<p>옆과 같음</p>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 행	순 화 안
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준용된다.
제87조 (건설이자배당인가의 신청)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에 준용된다.
제88조 (신주의 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증감신청) ① 「상법」 제4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 내 에 하여야 한다. ②심문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 수개 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삭 제	① 「상법」 제4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 에 하여야 한다. ②심문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 여러 개 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삭 제
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①제88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①제88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준용된다.
제90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제75조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제75조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준용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檢事)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1조 (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과 검사는 제90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회사, 이해관계인과 검사(檢事) 는 제90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92조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88조제4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의 신	제88조제4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된다.

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순 화 안
<p>제84조의2 (산재판의 화상판 합의 채택) 회 ①의 상법을 제304조제2항 규정상대에 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 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p>	<p>① 「상법」 제30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 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 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 용된다.</p>
<p>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의의 행위의 허 가신청) ①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직무대 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 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 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2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p>	<p>옆과 같음</p>
<p>제86조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 등) ①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 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 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 술을 들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p>	<p>(주식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 ∨ 등) ①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⑤ 옆과 같음</p>
<p>제86조의2 (주식매수가액의 산정·결정신 청등) ①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 의 산정이나 결정 또는 동법 제374조 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수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 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제8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p>	<p>(주식매수가액의 산정·결정신청 ∨ 등) ①옆과 같음 ②여러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제8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p>

【부록】 「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p>	
<p>제99조 (합병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98조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된다.</p>
<p>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결정의 재판) 제75조제1항,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239조제3항(동법 제269조와 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p>	<p>(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 결정 재판) 제75조제1항,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239조제3항(동법 제269조와 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준용된다.</p>
<p>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영업소폐쇄에의 준용) ①제76조 내지 제8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89조와 제100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90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①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8조, 제89조와 제100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90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02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동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75조제1항과 제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p>	<p>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동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75조제1항과 제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준용된다.</p>
<p>제103조 (사원초과의 인가신청) 「상법」 제5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사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인 경우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다.</p>	<p>총사원은 「상법」 제5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과 그 사유를 해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 √ 성립 √ 후인 경우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다.</p>
<p>제104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서의 합병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p>	<p>(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합병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p>

<p>정에 의한 <u>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u></p>	<p>한 <u>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u></p>
<p><u>법원은</u>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p> <p>제94조 (해산명령전의 회사재산보전에 필요한 처분) ①제41조, 제42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u>이를 준용한다.</u></p> <p>②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u>이를 준용한다.</u></p>	<p><u>옆과 같음</u></p> <p>①제41조, 제42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u>준용된다.</u></p> <p>②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u>준용된다.</u></p>
<p>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재산상태 <u>보고 등</u>) ①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u>보고 하고</u>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검사는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p>	<p>(회사관리인의 회사재산상태 <u>보고 √ 등</u>)</p> <p>①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u>보고하고</u>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u>검사(檢事)</u>는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p>
<p>제96조 (비용의 부담) ①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p> <p>②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p>	<p><u>옆과 같음</u></p>
<p>제97조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p>	<p>『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p>
<p>제98조 (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주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p>	<p><u>옆과 같음</u></p>

--	--

현 행	순 화 안
<p>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5조 본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이 법에 의하여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5조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제 2 장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p>	
<p>제109조 (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p>	<p>「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社債)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p>
<p>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동법 제4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사채(社債))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동법 제4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11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① 「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① 「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권자(社債權者)집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12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신청) 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상법」 제4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p>	<p>(사채권자(社債權者))집회의 소집허가신청) 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상법」 제4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준용된다.</p>

<p>제11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① 「상법」 제496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p> <p>제105조 유한회사의 합병인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사채권자(社債權者)집회) ① 「상법」 제496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104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된다.</p>
<p>제106조 (유한회사의 합병인가신청등에 관한 재판) 제81조의 규정은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유한회사의 합병인가신청등에 관한 재판) 제81조의 규정은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된다.</p>
<p>제107조 (그밖의 등기축탁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축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4.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5. 삭제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9.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10. 유한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p>(그밖의 등기축탁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축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의 청산인 해임 재판이 있는 때 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4.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5. 삭제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때 7. 옆과 같음 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 9. 주식회사의 주식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 10. 유한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

현행	순화안
<p>제119조 (청산인의 선임·해임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이 은행 또는 <u>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u>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의 감독에 관하여 한 명령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p>	<p>(청산인 선임·해임 Y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이 은행 또는 <u>상호신용금고업이나 상호신용금고관리업</u>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의 감독에 관하여 한 명령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p>
<p>제120조 (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제84조와 제85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게 <u>이를 준용한다.</u></p>	<p>(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제84조와 제85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게 <u>준용된다.</u></p>
<p>제121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u>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u>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자격이 정지되거나 <u>상실된 자</u>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u>받은 자</u></p>	<p>다음 <u>각 Y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자격이 정지되거나 <u>상실된 사람</u>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u>받은 사람</u></p>
<p>제122조 (검사인)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u>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u>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검사인(檢査人))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u>상호신용금고업</u>이나 <u>상호신용금고관리업</u>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23조 (청산인·검사인의 보수)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청산인 또는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u>검사인</u>을 선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청산인 또는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u>검사인(檢査人)</u>을 선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24조 (감정인의 선임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감정인의 소환과 심문의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옆과 같음</p>
<p>제125조 (감정인선임의 절차·재판)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제124조의 감정인의 선임절차와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p>	<p>옆과 같음</p>
<p>제126조 (청산인의 변제허가의 신청) 제81</p>	

<p>조제1항과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p>	<p>순 화 안 옆과 같음</p>
<p>제98조, 제85조제3항과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②제78조, 제85조제3항과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된다.</p>
<p>제114조 (사채모집위탁의 보수등 부담허가신청) ①「상법」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사채(社債)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①사채(社債)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상법」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된다.</p>
<p>제115조 (사채권자의기간연장의 신청) 제110조의 규정은 「상법」 제493조제3항(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사채권자 (社債權者)의기간연장의 신청) 제110조의 규정은 「상법」 제493조제3항(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된다.</p>
<p>제116조 (검사의 불참여) 제15조의 규정은 이 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검사(檢事)의 불참여) 제15조의 규정은 이 장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제 3 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p>	
<p>제117조 (관할법원) ①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에 대한 감독도 또한 같다.</p>	<p>①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업 또는 상호신용금고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에 대한 감독도 또한 같다.</p>
<p>제118조 (법원의 감독) ①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대하여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옆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옆과 같음</p>
<p>제142조 (등기부의 열람과 등초본 교부등) ①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느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 또는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u>수수료외에</u>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제2항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등기부의 열람과 등초본 교부 √ 등) ① 옆과 같음 ② 옆과 같음 ③누구든지 <u>수수료 √ 외에</u>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제2항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143조 (인감증명) ①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등기소에 <u>제출한 자</u>,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u>제출한 자</u>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4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증명서에 <u>이를 준용한다.</u></p>	<p>①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등기소에 <u>제출한 사람</u>,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u>제출한 사람</u>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4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증명서에 <u>준용된다.</u></p>
<p>제144조 (수수료) 제142조와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옆과 같음</p>
<p>제145조 (폐쇄등기부) ①폐쇄한 등기용지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등기부에 <u>이를 편철하여</u></p>	<p>①<u>폐쇄한 등기용지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등기부에 편철하여야 한다.</u></p>

야 한다. 현 행	순 화 안
<p>제128조 (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의 경우의 청산절차) 이 장의 규정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620조의 청산에 <u>이를 준용한다.</u></p>	<p>이 장의 규정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620조의 청산에 <u>준용된다.</u></p>
<p>제 4 장 상업등기 제 1 절 등기소와 등기관</p>	
<p>제129조 (관할등기소) 상업등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p>	<p>옆과 같음</p>
<p>제130조 (등기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p>	<p>옆과 같음</p>
<p>제131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옆과 같음</p>
<p>제132조 (등기관) ①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등기관”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②등기관은 자신, 자신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인인 때에는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성년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의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133조 ~ 제135조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②폐쇄등기부는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42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p>	<p>②폐쇄등기부는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42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준용된다.</p>
<p>제146조 (해산회사등기용지의 폐쇄)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는 폐쇄할 수 있다.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해산회사V등기용지의 폐쇄)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는 폐쇄할 수 있다.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 3 절 등 기 절 차 제 1 관 통 칙</p>	
<p>제147조 (신청주의) ①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효과 같음</p>
<p>제148조 (당사자출석주의) ①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효과 같음</p>

<p>제149조 (회사의 현 등기의 행 청)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이를 신청 등기부 등</p>	<p>순 화 안 옆과 같음</p>
<p>제136조 (상업등기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다음 각호의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상호등기부 2. 무능력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p>	<p>등기소에는 다음 각호의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 9. 옆과 같음</p>
<p>제137조 (등기용지에의 날인) 등기용지에는 지방법원장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138조 (등기부의 보존기간)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139조 (등기부등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40조 (등기부의 멸실과 등기의 회복)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의 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옆과 같음</p>
<p>제141조 (멸실방지의 처분) ①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p>	<p>옆과 같음</p>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 행	순 화 안
<p>제150조 (등기의 신청방식) ①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회사가 신청인인 때에는 그 상호, 본점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등기의 목적과 사유 4. 등기할 사항 5.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년월일 6.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7. 년월일 8. 등기소의 표시 <p>③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지점도 기재하여야 한다.</p>	<p>①옆과 같음</p> <p>② 1. - 4. 옆과 같음 5.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 Y년월일 6. - 8. 옆과 같음</p> <p>③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지점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51조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①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밖의 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기재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p> <p>①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에 기재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Y밖의 사람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p> <p>②옆과 같음</p>
<p>제152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153조 (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현행	순화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때 5.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제출이 없거나 신청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서나 제1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서에 찍힌 인감이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과 상이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면의 기재가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등기부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13. 사건이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16. 등록세 또는 제1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p>열과 같음</p>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순 화 안
<p>제155조 (지점소재지에서에서의 등기의 신청)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옆과 같음</p>
<p>제156조 (인감의 제출) ① 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① 등기의 신청서에 확인할 사람(회사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옆과 같음 ③ 옆과 같음</p>
<p>제157조 (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회사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상호),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서 기타의 서면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①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회사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상호),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서 기타의 서면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58조 (등기의 순서)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159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순화안
<p>제160조 (제소기간 경과후의 등기의 신청과 첨부서면) ①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9조제10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제1항의 경우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2조의 서면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소기간 경과후의 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①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9조제10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제1항의 경우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2조의 서면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161조 (행정구역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행정구역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62조 (등기의 이기)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만을 이기하여야 한다.</p>	<p>(등기의 옮겨적기) 등기를 옮겨 적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만을 옮겨 적어야 한다.</p>
<p>제163조 (문자기재의 방식) ①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자획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p> <p>②문자는 이를 번개할 수 없다.</p> <p>③문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붙이고 그곳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 두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현 행	순 화 안
제 2 관 상호의 등기	
<p>제164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할 수 없다.</p>	<p>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u>있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다.</u></p>
<p>제165조 (등기사항등) 상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4. 상호사용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p>(등기사항√등) 상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p>1. - 4. <u>열과 같음</u></p>
<p>제166조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와 폐지등기) ①상호의 등기를 <u>한 자</u>는 그 영업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영업을이전의 등기를, 신소재지에서는 제165조 각호에 기재한 사항의 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구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②상호의 등기를 <u>한 자</u>는 제165조 각호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또는 상호를 폐지한 때에는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①상호의 등기를 <u>한 사람은</u> 그 영업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영업을이전의 등기를, 신소재지에서는 제165조 각호에 기재한 사항의 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구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②상호의 등기를 <u>한 사람은</u> 제165조 각호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또는 상호를 폐지한 때에는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67조 (상호의 상속·양도에 의한 변경등기) ①상호의 등기를 <u>한 자의</u>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양도증서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양도인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한다.</p> <p>③<u>상호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증서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u></p>	<p>①상호의 등기를 <u>한 사람의</u>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양도증서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양도인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한다.</p> <p>③<u>상호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증서√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u></p>

현 행	순 화 안
<p>제168조 (영업양도의 경우의 면책증서) ①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이를 신청한다.</p> <p>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6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승낙서에 이를 준용한다.</p>	<p>(영업양도 경우의 면책증서) ①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한다.</p> <p>② 제1항의 등기 신청서에는 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6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승낙서에 준용된다.</p>
<p>제169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이 제166조 내지 제168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상속인이 제166조부터 제168조까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7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의 신청)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p>	<p>효과 같음</p>
<p>제171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제170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② 등기관은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제170조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p>	<p>①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제170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② 효과 같음</p>
<p>제172조 (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65조 내지 제167조와 제169조의 규정은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65조부터 제167조까지 규정과 제169조의 규정은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 3 관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p>	
<p>제173조 (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① 「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 2.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p>효과 같음</p>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 행	순 화 안
<p>4. 영업소 ②제166조의 규정은 무능력자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p>	<p>② <u>옳</u>과 같음</p>
<p>제174조 (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①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u>이를</u> 신청한다. ②<u>영업의 허락의 취소</u>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u>영업의 허락의 제한</u>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u>이를</u> 신청한다. ④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p>	<p>①<u>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신청한다.</u> ②<u>영업 허락의 취소</u>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u>영업 허락의 제한</u>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u>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u> ④ <u>옳</u>과 같음</p>
<p>제175조 (무능력자등기의 첨부서면) ①「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u>영업의 종류의 증가</u>로 인한 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①「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u>옳</u>과 같음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u>영업 종류의 증가</u>로 인한 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76조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①「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4. 영업소 ②제166조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p>	<p><u>옳</u>과 같음</p>
<p>제177조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법정대리인의 등기는 <u>법정대리인이 이를</u> 신청한다.</p>	<p>①법정대리인의 등기는 <u>법정대리인에 의해 신청된다.</u></p>

현 행	순 화 안
<p>②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무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p>	<p>② 옆과 같음 ③ 옆과 같음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신청된다.</p>
<p>제178조 (법정대리인등기의 첨부서면) ① 제175조제2항과 동조제3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77조제3항과 동조제4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퇴임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법정대리인▽등기의 첨부서면) ①제175조제2항과 동조제3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등기에 준용된다. ②제177조제3항과 동조제4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퇴임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 4 관 지배인의 등기</p>	
<p>제179조 (지배인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①지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로 수중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제166조의 규정은 지배인이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p>	<p>①지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주가 여러 개의 상호로 여러 가지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여러 사람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제166조의 규정은 지배인이 등기에 준용된다.</p>
<p>제180조 (회사의 지배인등기) ①회사의 지배인의 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제17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p>	<p>①회사의 지배인 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제17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p>
<p>제181조 (회사의 지배인등기신청) ①회사가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과 제179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①옆과 같음</p>

현 행	순 화 안
<p>②회사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제179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의 설정·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③회사의 지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회사가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 또는 제179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의 설정·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③회사 지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 5 관 합명회사의 등기</p>	
<p>제182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②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동의를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183조 (합명회사설립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 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p>합명회사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 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p>제184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제1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52조의 서면 외에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① 옆과 같음</p> <p>②제1항의 등기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등기 신청서에는 제152조의 서면 외에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85조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①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84조</p>	<p>①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84조</p>

현 행	순 화 안
<p>제2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p> <p>②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제184조제1항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동항의 인감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③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아 제184조제1항의 등기를 한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④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184조 제1항의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p>	<p>제2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p> <p>②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제184조제1항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동항의 인감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③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아 제184조제1항의 등기를 한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앞과 같음.</p> <p>⑤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184조 제1항의 등기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p>
<p>제186조 (본점의 신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①본점의 신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년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p> <p>②지점의 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년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p>	<p>(본점의 신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①본점의 신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년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p> <p>②지점의 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년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p>
<p>제187조 (변경등기의 첨부서면) ①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이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②사원의 입·퇴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①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에 있어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이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②사원의 입·퇴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부록】 「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제188조 (해산의 등기) ①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u>년월일</u>을 등기하여야 한다.</p> <p>②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u>년월일</u>을 등기하여야 한다.</p> <p>② <u>옆과 같음</u></p> <p>③ <u>옆과 같음</u></p>
<p>제189조 (청산인에 관한 등기) ①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의 청산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②사원이 선임한 <u>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u>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이 선임한 <u>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u>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동조동항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p> <p>③청산인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④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관한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u>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u>에는 그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① <u>옆과 같음</u></p> <p>②사원이 선임한 <u>청산인의 선임등기 신청서</u>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이 선임한 <u>청산인의 선임등기 신청서</u>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동조동항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u>옆과 같음</u></p> <p>④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관한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u>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u>에는 그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90조 (청산종결의 등기) ①「상법」 제2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②「상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u>옆과 같음</u></p>
<p>제191조 (계속의 등기) ①계속의 등기에 있어서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u>년월일</u>을 등기하여야 한다.</p>	<p>①계속의 등기에 있어서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u>년월일</u>을 등기하여야 한다.</p>

--	--

현 행	순 화 안
<p>제2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 하하여야 한다.</p> <p>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년월일을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이를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p>	<p>제2항의 등기의 신청 Y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 하하여야 한다.</p> <p>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Y 없이 그 등기 Y 년 Y 월일을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이를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p>
<p>제197조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전의 회사의 성립년월일, 변경전의 회사의 상호와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년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경우에 변경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후의 회사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p>	<p>①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전의 회사의 성립 Y 년 Y 월일, 변경전의 회사의 상호와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년 Y 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경우에 변경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후의 회사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p>
<p>제198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인한 변경후의 회사의 설립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 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 3.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p>효과 같음</p>
<p>제199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절차등) ①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인한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p>	<p>(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절차 Y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효과 같음 ②효과 같음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②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은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	순 화 안
②본상법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기규정에 의한 계속등기의 신청서에는 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옆과 같음
<p>제192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p> <p>①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p> <p>②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p>	<p>①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p> <p>②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p>
<p>제193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p> <p>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소멸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p>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멸회사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3. 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소멸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p>제194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p> <p>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 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3. 제193조 각호의 서면 4.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옆과 같음
<p>제196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p> <p>①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는 제195조</p>	①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는 제195조

현 행	순 화 안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옳과 같음
제204조 (이사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사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5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4.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5.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옳과 같음
제20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신	옳과 같음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p>주인수권부사행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 을 각호의 서면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순 화 안</p> <p>③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p>
<p>제 6 관 합자회사의 등기</p>	
<p>제200조 (합명회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2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82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등기에 준용된다.</p>
<p>제201조 (합명회사로의 계속 또는 조직변경의 등기) ①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서 회사를 계속하거나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합명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①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서 회사를 계속하거나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합명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된다.</p>
<p>제 7 관 주식회사의 등기</p>	
<p>제202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p>	<p>효과 같음</p>
<p>제203조 (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 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p>	<p>효과 같음</p>

현행	순화안
<p>제213조 (전환사채등의 등기) 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종의 대차대조표 2.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사채청약서 4.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p>②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2회이후의 납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전환사채√등의 등기) 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옆과 같음 ②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2회이후의 납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p>제214조 (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p> <p>②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p> <p>②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④ 옆과 같음</p>
<p>제214조의2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사록 3.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서면 	<p>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옆과 같음 2. 옆과 같음 3.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옆과 같음 5. 옆과 같음

【부록】 「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5. 「상법」 제36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순 화 안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2. 제205조제5호의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옆과 같음
제207조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법」 제351조(동법 제5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의 청구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351조(동법 제5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 청구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8조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옆과 같음
제209조 (주식의 병합·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주식의 병합(자본감소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	①주식의 병합(자본감소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준용된다 .
제210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과 제209조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옆과 같음
제211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93조제2호의 서면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때에는 제209조제1항의 서면	옆과 같음
제212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옆과 같음

현 행	순 화 안
<p>6. 「상법」 제360조의10제5항에 의한 반대대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서면</p> <p>7.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p>	<p>6. 옆과 같음</p> <p>7.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p>
<p>제214조의3 (주식이전에 의한 설립의 등기) 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제214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서면</p> <p>2. 제203조제1호·제9호 및 제10호의 서면</p> <p>3. 「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액을 증명하는 서면</p> <p>4. 「상법」 제360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p>	<p>옆과 같음</p>
<p>제215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합병계약서</p> <p>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p> <p>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p> <p>4.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제209조제1항의 서면</p> <p>5.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p> <p>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p>	<p>옆과 같음</p>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 행	순 화 안
<p>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220조 (설립의 등기) ①설립의 등기는 회사를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p> <p>②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 관 2. 출자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옆과 같음 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옆과 같음 2. 옆과 같음
<p>제221조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출자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p>옆과 같음</p>
<p>제222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93조제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p>제223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3. 제193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서면 4.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제218조제1항제4호의 서면 5. 「상법」 제60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p>옆과 같음</p>

순 화 안	
<p>제224조 (합병으로 인한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16조 (합병서류를인첨부하여야 하는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5조 각호의 서면 2. 제203조제1호 및 동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서면 3. 제194조제4호의 서면 	<p>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옆과 같음 2. 제203조제1호 및 동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면 3. 옆과 같음
<p>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준용된다.</p>
<p>제217조 (합병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4조 내지 제186조, 제188조 내지 제190조, 제191조제1항, 제192조, 제195조와 제19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84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88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1조제1항, 제192조, 제195조와 제19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된다.</p>
<p>제218조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①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 관 2. 제193조제2호의 서면 3.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제220조제2항제3호 및 동조동항제4호의 서면 <p>②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① 옆과 같음</p> <p>②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된다.</p>
제 8 관 유한회사의 등기	
<p>제219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를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p>	<p style="text-align: center;">옆과 같음</p>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1. 제223조 각호의 서면 2. 제220조제2항제1호·제3호 및 동조동항제4호의 서면 3. 제194조제4호의 서면	1. 옆과 같음 2. 옆과 같음 3. 옆과 같음
제225조 (계속의 등기) 「상법」 제6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u>경우의 계속등기의 신청서에는</u> 신사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6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u>경우의 계속등기 신청서에는</u> 신사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6조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04조와 제217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옆과 같음
제227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203조제9호 및 동조제10호의 서면 3. 제218조제1항제2호 및 동조동항제3호의 서면 ②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u>이를 준용한다.</u>	① 옆과 같음 ②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u>준용된다.</u>
제 9 관 외국회사의 등기	
제228조 (외국회사의 등기의 신청)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u>이를 신청한다.</u>	(외국회사의 <u>등기신청</u>)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u>신청한다.</u>
제229조 (영업소설치의 등기) ①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②제1항의 서류는 <u>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u>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u>외국의 영사의 인증</u> 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① 옆과 같음 ②제1항의 서류는 <u>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u>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u>외국 영사의 인증</u> 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현행	순화안
<p>제234조 (등기의 말소) ①등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p>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①등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9조제1호부터 제3호의1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옆과 같음 <p>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35조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등) ① 등기관은 등기가 제2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등기관은 등기를 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p>	<p>(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등) ① 등기관은 등기가 제2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사람에게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등기관은 등기를 한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p>
<p>제236조 (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237조 (등기의 직권말소)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p>	<p>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p>
<p>제238조 (지점소재지에서서의 등기의 말소) ①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p>	<p>①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지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에 한하</p>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p>다. 그러나 <u>첨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에 한하여 말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u></p>	<p>여 말소의 <u>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u></p>
<p>다. 그러나 <u>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 당해 영업소를 설치한 뜻의 기재가 있는 다른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다. 그러나 <u>제1항의 등기 신청서에 당해 영업소를 설치한 뜻의 기재가 있는 다른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230조 (변경의 등기) ①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u>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u>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u>외국의 영사의 인증</u>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 다른 등기소에 이미 그와 같은 등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다. 그러나 <u>제1항의 등기 신청서에 당해 영업소를 설치한 뜻의 기재가 있는 다른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①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u>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u>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u>외국 영사의 인증</u>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 신청서에 다른 등기소에 이미 그와 같은 등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31조 (신소재지에서의 영업소이전의 등기)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u>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구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u></p>	<p>(신소재지에서의 영업소이전 등기)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u>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구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u></p>
<p>제10관 등기의 경정과 말소</p>	
<p>제232조 (등기의 경정) ①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경정의 신청서에는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결과 같음</p>
<p>제233조 (등기의 직권경정) ①등기관은 등기를 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u>지체 없이</u>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나 빠진 것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의 경정을 하고 등기를 <u>한 자에게</u>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①등기관은 등기를 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u>지체 없이</u>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나 빠진 것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의 경정을 하고 등기를 <u>한 사람에게</u>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p>

현행	순화안
<p>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본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등기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p>	<p>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본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등기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p>
<p>제11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에 관한 특례</p>	
<p>제238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등) ①상업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p> <p>②제1항의 경우에 제136조 각호의 등기부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등)</p> <p>①옆과 같음.</p> <p>②제1항의 경우에 제136조 각호의 등기부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38조의3 (등·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등) ①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등의 청구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수수료외에 우송료를 납부하여 그 서면의 송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등·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등) ①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등의 청구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수수료▽외에 우송료를 납부하여 그 서면의 송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옆과 같음</p>
<p>제238조의4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①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의 폐쇄등기부는 이를 두지 아니할</p>	<p>①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p> <p>②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의 폐쇄등기부는 두지 아니할 수</p>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 행	순 화 안
<p>수 있다. 이 경우 폐쇄한 등기내용을 따로 기록·보관한 자기디스크를 폐쇄등기부로 본다.</p>	<p>있다. 이 경우 폐쇄한 등기내용을 따로 기록·보관한 자기디스크를 폐쇄등기부로 본다.</p>
<p>제238조의5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238조의2 내지 제2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238조의2부터 제238조의4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 4 절 이의√등</p>	
<p>제239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240조 (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p>	<p>효과 같음</p>
<p>제241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p>	<p>효과 같음</p>
<p>제242조 (등기관의 조치) ①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3일이 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뜻을 부기한 후 이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p>	<p>①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뜻을 덧붙여 적은 후 이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43조 (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p>	<p>효과 같음</p>
<p>제244조 (이의에 대한 결정)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45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를</p>	<p>등기관이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를</p>

현 행	순 화 안
<p>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u>년월일</u>,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의 <u>년월일</u>을 기재하고 <u>날</u> 인하여야 한다.</p>	<p>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u>년\vee월일</u>,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의 <u>년\vee월일</u>을 기재하고 <u>확인</u>하여야 한다.</p>
<p>제246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u>법중</u>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이 <u>법\vee중</u>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 4 편 보 칙</p>	
<p>제247조 (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u>처할 자</u>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p>	<p>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u>처할 사람</u>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p>
<p>제248조 (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①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u>검사</u>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와 <u>검사</u>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u>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u>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p>	<p>(<u>과태료 재판의 절차</u>) ①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u>검사(檢事)</u>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와 <u>검사(檢事)</u>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u>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u>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옆과 같음</p>
<p>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u>검사</u>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u>집행력있는</u> 채무명 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p>	<p>①과태료의 재판은 <u>검사(檢事)</u>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u>집행력\vee있는</u> 채무명 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옆과 같음</p>
<p>제250조 (약식재판)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p>	<p>①옆과 같음</p>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 행	순 화 안
<p>②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p> <p>④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p>	<p>②당사자와 검사(檢事)는 제1항의 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옆과 같음</p> <p>④옆과 같음</p>
<p>제251조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옆과 같음</p>

【가사비송사건 관련규정】 (『가사소송법』 제34조부터 제45조까지)

현 행	순 화 안
제 1 장 통 칙	
<p>제34조 (준용법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u>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u></p>	<p>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u>준용되지 아니한다.</u></p>
<p>제35조 (관할) ①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3조제2항 <u>내지</u> 제5항의 규정은 가사비송사건에 <u>준용한다.</u></p>	<p>①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3조제2항<u>부터 제5항까지</u>의 규정은 가사비송사건에 <u>준용된다.</u></p>
<p>제36조 (청구의 방식) ①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②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u>년월일</u> 4. 가정법원의 표시 ④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u>법원사무관등</u>”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①열과 같음 ②열과 같음 ③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 2. 열과 같음 3. 청구의 <u>년월일</u> 4. 가정법원의 표시 ④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u>법원사무관등</u>”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37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①심판청구에 관하여 <u>이해관계있는 자</u>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p>	<p>①심판청구에 관하여 <u>이해관계 있는 사람</u>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p>

【가사비송사건 관련규정】

현 행	순 화 안
<p>②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p>	<p>②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 √ 있는 사람을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p>
<p>제38조 (증거조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심문할 수 있고, 기타 관계인을 증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심문할 수 있다.</p>	<p>옆과 같음</p>
<p>제39조 (재판의 방식) ①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중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중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심판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 문 3. 이 유 4. 법 원 <p>③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① 옆과 같음</p> <p>②심판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1. - 4. 옆과 같음</p> <p>③옆과 같음</p> <p>④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시기) 심판은 이를 받을 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p>	<p>심판은 이를 받을 자가 고지받으면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p>
<p>제41조 (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채무명이가 된다.</p>	<p>옆과 같음</p>
<p>제42조 (가집행) ①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현행	순화안
<p>②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p> <p>③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옆과 같음</p>
<p>제43조 (불복) ①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p> <p>②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③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p> <p>④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p> <p>⑤즉시항고의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로 한다.</p>	<p>옆과 같음</p>
<p>제 2 장 라류 가사비송사건</p>	
<p>제44조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한정치산에 관한 사건, 실종에 관한 사건,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 3. 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정법원 4.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 또는 양자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부부간의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 	<p>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옆과 같음 3. 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정법원 4.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 또는 양자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부부간의 공동의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

【가사비송사건 관련규정】

현 행	순 화 안
<p>정사건을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p> <p>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p> <p>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사건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p> <p>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p>	<p>결정사건을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p> <p>6. - 8. 옆과 같음</p>
<p>제 3 장 마류 가사비송사건</p>	
<p>제45조 (심리방법)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p>	<p>옆과 같음</p>
<p>제46조 (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p>	<p>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은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한다.</p>
<p>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에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Y 중에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8조 (심리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p>	<p>옆과 같음</p>

참 고 문 헌

< 외국문헌 >

- * Bauer/Stürner Sachenrecht, 17. Auflage, 1999, C.H.Beck.
- * Bauer/Wolf Grundbegriffe des Rechts der Freiwilligen Gerichtbarkeit, 2. Auflage, 1980.
- * Carl Creifelds(begründet), Rechtswörterbuch, 18. Auflage, 2004, C.H.Beck.
- * Wolfgang Brehm, Freiwilliges Gerichtbarkeit, 2.Auflage, 1993, Boorberg.

< 국내문헌 >

- * 강현철·곽관훈, 한·일 민법전 법령용어와 문장의 비교 및 순화정비에 관한 연구, 2004.11, 한국법제연구원.
-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2000년.
-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법안 심사시 국어전문가 활용메뉴얼, 2006년 8월 국무조정실 인터넷자료.
- * 국회사무처, 법률용어·법문표현·입법모델 입안방법, 2004. 9. 3. 국회사무처 예규 제16호; 2004.12.22 국회사무처 예규 제18호.
- * 김문오, 법조문의 문장실태조사, 2001, 국립국어연구원.
- * 김문호·홍사만, 쉽게 고쳐 쓴 우리민법, 2003, 국립국어연구원.
- * 김상수, 민사소송법개론, 법문사, 2002년.
- * 류창호,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참 고 문 헌

- * 민사집행법 실무 연구회, 민사집행법 질의·응답(실무자료), 2006. 2.
- * 박갑수, 개정 민사소송법의 순화와 향후과제, 한국법제연구원(개정 민사소송법의 법률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와 향후과제 - 2003년 제1차 전문가회의 -), 2003. 4. 30.
- * 박동섭, 가사소송법(실무), 2006.3, 법률문화원
- * 박영도, 법령용어사례집 - 유사법령용어 -, 2001, 한국법제연구원.
- * 박영도·최성근·손희두,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133쪽, 2001. 6, 한국법제연구원.
- * 법원행정처 민사비송재판실무편람, 2004. 3.
-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 제2집(상·하), 2003.
- *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순화정비의 체계화·민주화를 위한 법제연구(공동학술세미나), 2004. 6. 11.
- * 부동산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2004.
- * 이시윤, 민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06. 2.
- * 장병일, 부동산등기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5. 8, 한국법제연구원.
- * 조임영, 한구과 프랑스의 법률용어 비교, 2005. 10.
-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6.
- *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민사소송법의 순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개정 민사소송법의 법률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와 향후과제 - 2003년 제1차 전문가회의 -), 2003. 4. 30.